

2013년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안)



2013. 1.

교육과학기술부

< 기본방향 >

- ◇ 성장기의 학생들을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육성하는 것은 우리 미래사회를 위해 가장 중요함
- ◇ 그동안 우리부에서는 학생들의 여러 가지 건강문제를 진단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 학생들의 건강문제를 통합적으로 분석·관리하는 창의경영학교로서의 '건강증진모델학교'를 선정·지원하고,
 - 학교폭력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모든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 학교내·외 유해환경으로부터 학교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석면을 사용한 학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및 라돈가스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 학교급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및 알레르기 식품 표시제 시행 등 학교보건·환경·급식분야 전반에 걸친 학생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분석·평가 하였음
- ◇ '13년도에는 그 간의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관련 전문가 자문 및 시·도교육청 협의회 등을 거쳐 보다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기본방향을 수립한 바,

우리의 미래주역인 어린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정서적·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서는 본 기본방향을 토대로 별도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추진 하시기 바람

학생건강 유지 및 증진을 통한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으로 건강한 민주시민 육성

보건분야

- ▣ 학교 성교육 등 보건교육 내실화
- ▣ 학생 건강관리 철저
- ▣ 학교 건강검사 철저
- ▣ 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 및 관리강화
- ▣ 교내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 학생 흡연 등 약물 오·남용 예방

환경분야

- ▣ 학교 먹는물 위생관리 대책
- ▣ 학교 교사내 공기질 등 환경위생 개선
-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교육환경보호제도 관리철저
- ▣ 학교 석면관리 강화

급식분야

- ▣ 학교급식 운영 내실화
- ▣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
- ▣ 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도강화
- ▣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 ▣ 저소득층 및 농어촌 지역 학교급식비 지원
- ▣ 학교급식 지도감독 및 행정지원 강화
- ▣ 「식품안전관리 기본 계획」 세부과제 추진

••• 목 차 •••

I. 보건관리

| | |
|------------------------------|----|
| 1. 학교 성교육 등 보건교육 내실화 | 2 |
| 2. 학생 건강관리 강화 | 4 |
| 3. 학교 건강검사 철저 | 6 |
| 4.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강화 | 9 |
| 5. 교내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10 |
| 6. 학생 흡연 등 약물 오·남용 예방 | 12 |

II. 환경관리

| | |
|------------------------------------|----|
| 7.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대책 | 15 |
| 8. 학교 교사(校舍)내 공기 질 등 환경위생 개선 | 20 |
| 9.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교육환경보호제도 관리 철저 .. | 25 |
| 10. 학교 석면관리강화 | 29 |

III. 급식관리

| | |
|---------------------------------|----|
| 11.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 32 |
| 12.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 | 35 |
| 13. 영양관리 및 식생활지도 강화 | 40 |
| 14.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 44 |
| 15.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 학교급식비 지원 | 46 |
| 16. 학교급식 지도·감독 및 행정지원 강화 | 48 |
| 17.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세부과제 추진 | 50 |

IV. 행정사항

1. 연간 주요행사 및 일정 52

2. 보고 사항

○ 보고 목록 54

○ 보고 서식 56

※ 참고자료

☞ 고발요령 및 절차 86

☞ 학교내 결핵관리 지침 요약 88

☞ 학교 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및 관리방안 93

☞ 학생건강검진 승낙서 94

☞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교육 내용과 시행방법 96

☞ 2013년도 기본방향 주요 변경사항 요약 97

I. 보건관리

1. 학교 성교육 등 보건교육 내실화
2. 학생 건강관리 강화
3. 학교 건강검사 철저
4.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강화
5. 교내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6. 학생 흡연 등 약물 오·남용 예방

1. 학교 성교육 등 보건교육 내실화

□ 기본방침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
- 학교 보건교육(성교육) 내실화를 위한 연구(시범)학교 및 연구대회 운영, 교사 연수, 보건교사 보조인력 배치 등 지원활동 강화

□ 현황

- ‘초·중등교육과정’에 의한 초·중등학교에서 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
 - ▣ 초등학교 1, 2학년 :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활용, 체계적으로 실시
 - ▣ 중학교 1학년 : 교과(군) 선택과목, 범교과 학습 주제로 실시
 - ▣ 고등학교 1학년 : 교과(군) 선택과목(교양교과군), 범교과 학습 주제로 실시
- 주지교과 위주의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으로 초·중등교육과정 개정의 실효성 미흡
 - ※ 국정감사 시 보건교육 실시율 허위보고 및 바구니 교과서 등 부실운영 지적
- 학교 성교육은 여러교과에 분산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예방차원의 체계적·지속성이 미흡하고,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낮은 만족도 및 전문인력 등 관련 인프라 부족
 - ※ 실태조사 결과(‘12) : 10시간 이상 실시율 75.5%, 보건교과 43.7%, 성교육만족도 5점중 3.31점(초)

□ 추진방향

<공통사항>

- 학교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연중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교육내용, 방법, 시수, 대상 등을 고려하고, 최소한 1개 학년 이상은 연간 17차시 이상 정규교육과정에서 지속적·체계적 운영
 - ※ 일회적·형식적 교육이 아닌, 학생발달수준을 고려한 실질적 교육을 위하여 정기적인 수업시수 확보

- 교육감(장)은 학교보건교육 가이드라인 및 장학지도 계획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안내하고 보건교육과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도·관리 강화
 - 교육감(장)은 각 급 학교에서 「초·중등교육과정」에 따른 체계적인 보건교육(성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 보건교사 수업 중 학생건강관리 및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 학교실정에 따라 보건실 근접 교실 또는 보건실 내에 보건교육실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시 신속히 접근·대처
 - 교재 및 교구지원, 학교보건 보조인력 배치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 학교보건교육(성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연구(시범)학교 및 연구대회 운영, 교사 연수 등 지원활동 강화
 - 단순 지식 중심의 교사연수 지양, 효과적인 교수법 함양을 위한 연수운영
 - 장학(동료장학, 임상장학 등) 활성화를 통한 교수법, 교육자료 공유 등 실질적인 연찬 기회 확대
- ※ 교과연구회, 수업연구대회 등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공유

<학교성교육 강화방안>

- 초·중등학교에서 체계적인 성교육 실시가 가능토록 2013년부터 연간 15시간 이상(현행 10시간)의 수업실시 의무화
 - * (유아) 현행 8시간 → 10시간/ (초·중·고) 현행 10시간 → 15시간
- 내실 있는 성 교육 실시를 위해 보건교사의 단계적 확대배치 추진 및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담당교원에 대한 직무연수 실시(연 30시간 이상)
 - 보건교사 배치율이 국·공립학교(67.0%)에 비해 낮은 사립학교(57.1%) 배치 확대
 - 보건교사 미배치고 담당교원을 위한 특별 연수과정을 직접 개설하거나, 외부 전문기관 연수과정 안내
- 차기 교육과정 개편시 현재 이론중심의 교육내용을 발달단계를 고려한 체감형 교육내용으로 개편 예정
 - ⇒ 교육과정 개편시까지 프로젝트형 교육자료 적극활용('13년 하반기 보급 예정)

2. 학생 건강관리 강화

□ 기본방침

-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지원을 위한 정서·행동특성검사, 흡연 예방 및 금연지도, 건강한 체중관리, 안전사고로 인한 응급처치 등 건강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관리
- 학생 개개인의 태도와 습관을 변화시켜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토록 하고, 각종 질병을 예방하여 건강하고 명량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

□ 현 황

- 학생 건강검사 결과 시력이상 및 구강질환 학생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비만 등 만성질환이 증가추세
 - 시력이상 ('01) 39.5% → ('11) 57.6%, 구강질환 ('01) 57.5% → ('11) 59.3%, 비만 ('07) 11.2% → ('11) 14.3%('11 표본조사 결과)
- 학생건강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 부족

- 보건교사 배치현황

(2012. 4. 1 현재)

| 구 분 | 초등학교 | 중 학 교 | 고등학교 | 특수학교 | 계 |
|-----------------|-----------------|-----------------|-----------------|----------------|--------------------------|
| 전체 학교수 | 5,895 | 3,162 | 2,303 | 156 | 11,516 |
| 보건교사배치 (배치율) | 4219 (71.6%) | 1623 (51.3%) | 1568 (68.1%) | 133 (85.3%) | 7,543 (65.5%) |

* 연도별 추세 : ('07) 64.7% → ('08) 65.2% → ('09) 64.9% → ('10) 64.6% → ('11) 65.4%

-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보건교육 자료 및 적용 프로그램 개발·보급 미흡
 - 학생 건강관련 각종 연구결과에 대한 자료의 공유가 부족하고, 시·도교육청의 시범학교 종료 후 개발된 프로그램 활용 미흡

□ 추진방향

- 『건강증진모델학교』 선정·운영에 따른 시·도교육청 역할 확대
 - 2012년도 신규지정·운영(98개교)한 학교 중 전문기관 평가결과* 상위 10% 해당학교(10개교)는 시·도교육감 연구학교로 지정·운영(2년)
 - * 평가결과는 시·도교육청별 기통보(학생건강총괄과-107~122, '13. 1. 7)
 - 기존 건강증진모델학교 중 2013년 교과부 예산지원이 중단되는 학교(교과 평가결과 일정범위 이하의 학교)에 대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지원 등 검토
 - 2013년 운영되는 건강증진모델학교에 대하여는 향후 일반화를 위해 시·도교육청에서의 적극적인 참여 및 지원 확대
- ※ 2013년 신규지정 여부 및 규모 등은 추후 확정하여 별도통보 예정
- 학생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보건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강화
 - 학교장은 학생의 질병의 치료와 예방, 건강한 체중관리, 음주·흡연과 약물남용 예방 등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 강구
-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학생들의 체계적인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
- 교과부에서 ‘학생 건강정보 홈페이지(<http://schoolhealth.kr>)’를 구축·운영하여 다양한 학생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컨설팅 역할 추진
 - 시·도교육청에는 관련자료 공유 및 각급학교에서 동 홈페이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3. 학교 건강검사 철저

□ 기본방침

-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
- 질병 또는 건강문제가 발견된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서는 건강상담·치료 및 보호 등 적절한 대책 강구

□ 현 황

- 초·중·고등학교에서는 2006년부터 개정된 「학교보건법」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거 재학생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 학교별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학교건강검사 결과 분석 및 학교보건계획 수립 시 학생건강조사 및 건강검진 분석자료 활용도 미흡
 - 일부 건강검진 기관의 형식적 불성실한 검진에 따른 낮은 학부모의 만족도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구강검진 및 출장검진 자격요건 강화로 학생검진 기피 등 애로사항 발생
 - 건강(구강)검진인력 교육, 인력·시설·장비기준 등 지정기준 미충족 검진 기관의 학생(구강)검진 교육감(장) 불법허용사례 민원지적
- 일부지역에서는 건강검사 항목 이외의 검사를 실시하여 교육재정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일부 유치원에서는 불필요한 건강검사 실시(학부모 부담)하는 사례

<주요 민원 사례>

- 의사가 직접 검진하지 않고 간호사(치위생사) 등이 검진하는 사례
- 의사검진 시 검사항목에 대한 충분하고 세심한 진료가 아닌, 형식적·불충분한 진료
- 다수의 학생이 일시에 몰림현상으로 인한 검진환경의 혼잡 및 불편초래
- 검진기관이 학생검진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행위

□ 추진방향

- 모든 학생에 대한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취학 후 매 3년마다(초1·4, 중1, 고1) 실시되는 건강검진 및 활용방안 적극 지도
 - 건강검사 소요예산 확보·지원, 별도검사 항목별 대상학년 선정, 건강조사에 필요한 구조화된 설문지 제공 등 학교에서 건강검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 학교건강검사 제도 관련규정 개정안 적극 안내 및 적법한 운용 지도
 - 학교의 장이 학생건강검사(건강조사, 건강검진, 신체의 발달상황) 결과를 분석하여 당해학교의 학교보건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강화
- 학생건강검진 만족도 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조치
 - 교육청 또는 학교단위에서 검진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서면 또는 방문 등)를 통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진기관에 개선요청(공문시행)하는 등의 적극적인 질(質)관리 조치
- 국가차원의 학생건강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건강검사 표본학교 지정·운영 → 교과부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운영매뉴얼』(학생건강안전과-1291, '12. 2.23)
- 학생검진기관 계약 간소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 ※ 검진기관과 계약 시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여부 확인
- 학생 건강지표 관리 및 건강검사 운영체계 개선
 - 학생 건강지표의 신뢰도 및 타당도 확보를 위한 건강검사 표본조사 체계 선진화
 - 학교건강검사의 적법한 운영 지원 및 현장지도·점검 철저
 - ※ 건강검사 담당자(학교 및 검진기관) 연수 및 표본통계 조사체계 구축·운영
-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서 정한 건강검사 항목 이외의 검사 금지
 - 불가피한 사유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 및 교과부와 사전 협의

※ **초등학생 구강검진** 관련 참고사항(법률자문가 유권해석 결과)

- ◇ 「학교보건법」 제7조제2항제1호 단서규정에 따르면(2007.12.14 개정) 초등학생 구강검진의 방법(출장검진과 내원검진 등 방법결정 및 검진비용 등)은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항임
 - ▶ 따라서 「학교건강검사규칙」에서 정한 건강검사 세부방법은 구강검진을 제외한 일반검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구강검진은 법률에서 정한대로 교육감이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 **검진기관으로 승인 받지 않은 보건(진료)소**에서의 구강진료를 건강검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검진기관으로 승인 받지 않은 보건(진료)소에서의 구강진료는 검진이 아니며 이 경우에는 **학교건강검사에서의 ‘구강검진’은 미 실시**로 처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검토(근거)자료 첨부
 - 「학교보건법」 제7조제4에서는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이용 가능한 검진기관 부재 등)로 검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지역내에 검진기관의 부재 및 인근지역 이동 등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지역내 보건(진료)소의 구강관리실 등에서 학생 구강진료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구강보건 관리를 할 수 있음

※ 일부 검진기관에서 학생검진결과를 임의 특정기관에 DB화 의뢰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학교의 주의 요망

4.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강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2012년도 추진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및 2013년 세부 추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는 바, 추후 별도로 시행할 예정임

5. 교내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기본방침

- 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밀집해서 공동생활을 하므로 감염병 발생시 급속히 전파되기 때문에 방역기관의 협조로 신속한 대처방안 강구
- 감염병예방 보건교육 및 면역증강, 환경위생 개선 등으로 사전예방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유지·증진 도모

□ 현 황

- 초등학교 외에 중학교 신입생까지 입학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예방접종의 완료여부 검사 의무화(「학교보건법」 제10조, '07.12.14 개정)
- 최근 생활환경과 식생활 수준이 향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 감염병 환자수 통계는 증가추세
 - 감시체계 및 보고체계의 강화로 환자 통계처리의 투명화
 - 전문가들은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체력저하 등으로 신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이 그 원인의 하나로 지적

□ 추진방향

-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철저
 - 취약환경 및 병원소 관리를 통한 감염원 제거
 -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도록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환자 조기발견 및 이환자 등교중지 등 격리조치로 교내확산 방지
 - 감염병 발생에 따른 학교 및 교육청의 단계별 대응체계 확립 및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특별 연수 등 실시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직원 채용 시는 물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 면역력이 약한 학생들이 집단으로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 학교에서의 감염병 발생 시 감독청에 즉시 보고 및 방역기관 통보로 신속한 방역체계 구축

- 집단으로 발병하였거나 전염성이 강한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대책 협의회를 즉시 구성**하여 실태 파악 및 대책강구
 - ⇒ **제1군 감염병 및 홍역, 결핵**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NEIS와 업무관리시스템 연계를 활용하여 **공문(전자문서)을 통한 보건소 신고**)
- 등교중지 또는 휴업을 실시한 경우 학생 생활지도 및 휴업학생 수업결손에 따른 대책 강구
- 의료기관이 없는 농산어촌지역은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 감염병 예방관리 실시
- NEIS 감염병 환자 통계 관리 철저
 - ※ 교육(지원)청 감염병 업무 담당자는 관내 학교의 감염병 발생 보고현황을 매일 확인(NEIS 보고 현황)하여 감염병 발생 현황 제출이 지연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감염병 발생현황 관리 철저
-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매뉴얼』 적극적으로 활용(‘11.12월 보급, 학생건강 정보센터 탑재)
- 학교 내 결핵예방 및 관리강화 【참고자료 2】
 - 결핵환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과정에서 필요시 관할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결핵관련 설명회 개최**하는 등 “학교 결핵관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학교내 결핵 전파를 조기 차단 및 관리강화
- 학교내 예방접종 또는 학교단위 단체 예방접종은 금지하고, 방역당국 주관 예방 접종 시에도 사전예진 철저히 부작용 방지(「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6호)」)
- 학생 손씻기 운동 및 지도 강화
 - 학교에서 비누를 이용한 손씻기 실천율은 식사하기 전에는 34.3%, 화장실 다녀온 후에는 55.5%로 ‘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 1일 8회 30초간 손 씻기(1830)운동 전개
 - 학교 신·개축 및 보수 시 손씻는 시설을 확충(복도, 식당입구, 화장실 등)하고, 특히 동절기에도 온수공급으로 충분한 손씻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의 적극적 설치
 - 비누, 종이타월, 손 건조기 등 손 닦는 비품 비치 및 개인 손수건 휴대하기 지도

6. 학생 흡연 등 약물 오·남용 예방

□ 기본방침

- 최근 청소년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이 저연령화·다양화·확산추세에 있고, 이로 인한 비행도 증가하는 등 청소년 약물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청소년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이 더 이상 확산되기 전에 학교 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사전에 접근을 차단하는 대책 마련·시행

□ 현 황

- 청소년들이 주로 술이나 담배 등을 남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과도한 살빼기 등의 목적으로 진통제, 진해거담제 등 일반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 신경 및 신체조직 손상과 더불어 신체발육지연 및 신체기능 부조화 등 성장기의 약물남용은 치명적인 건강장애로 치료 불가능 상태
 - 흡연·음주는 또 다른 일탈행위로 이어지는 경향
-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건강행태조사(교과부·복지부 공동조사, 제8차) 결과
 - 흡연율은 11.4%(중 7.2%, 고 15.4%)이고, 중독된 학생(하루 10개비 이상 흡연)도 전체의 2.3%로 조사(2012)
 - 음주율은 19.4%(중 10.3%, 고 28.2%)이며, 이중에서 위험 음주율(남자: 소주 5잔 이상 음주자, 여자: 소주 3잔 이상 음주자)은 47.6%로 조사(2012)

□ 추진방향

- 학생들의 음주·흡연 등 약물 오·남용에 대한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보건교육시 활용하고, 사전에 접근을 차단하는 대책 마련·시행

-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 초등학생 연 2회이상, 중·고등학생 연 1회 이상 의무적 교육 실시
 -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의 정규수업 및 학교장 재량시간 등을 이용한 특별 교육 강화
 - 중·고등학교의 음주 예방교육 실시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교내 주류 반입 금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
-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공유
 - 약물남용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시 학생건강정보센터를 통한 공유
 -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에 탑재된 약물남용 교육자료 적극 활용
- 교원 연수를 통한 지도능력 배양 및 인식제고
 - 교원연수기관에서는 자격연수 등 교원연수시 흡연 등 약물남용 예방내용을 포함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지도자 과정 운영
- 흡연 등에 중독된 학생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금연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운영(「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 ※ 학교 운동장 등 금연구역 확대적용 조기시행(학생건강안전과-1255, '12. 2.22), 법령개정 안내(학생건강총괄과-3258, '12.12.4) 참조

2012년 7대 특별시·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연학교 위탁운영’ 사업은 그 성과분석 후 해당교육청 협의를 거쳐 규모 등을 확정 추후통보

Ⅱ. 환경관리

7.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대책
8. 학교 교사(校舎)내 공기 질 등 환경위생 개선
9.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교육환경보호제도
관리 철저
10. 학교 석면관리 강화

7.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대책

□ 기본방침

- 학교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생적인 물의 공급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 및 유지·증진에 기여

□ 현 황

- 2012. 7월 현재 농어촌지역 등 상수도 인입이 어려워 지하수(운반급식 포함)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학교는 전체학교의 5.0%인 590개교임
 - 지역상수도 인입 및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으로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학교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음
 - ('95) 4,718교(42.5%) → ('00) 2,146교(21.6%) → ('12) 590교(5.0%)

<급수시설별 각급 학교 현황('12. 7)>

| 구 분 | | 초등학교 | 중 학 교 | 고등학교 | 특수/각종 | 계 |
|------------|-----|------------------|------------------|------------------|----------------|----------------------|
| 전체 학교수 | | 6,187 | 3,195 | 2,304 | 176 | 11,862 |
| 급 수 시설 (%) | 상수도 | 5,816 (94.0%) | 3,053 (95.6%) | 2,239 (97.2%) | 164 (93.2%) | 11,272 (94.2%) |
| | 지하수 | 371 (6.0%) | 142 (4.4%) | 65 (2.8%) | 12 (6.8%) | 590 (5.8) |

* 학교 수에 분교장이 포함되고, 상수도에는 외부공급 포함

- 학교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 지하수는 지표수의 오염 등으로 수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검사 시기에 따라 수질기준 초과학교 유동적(매분기 1차 측정결과 초과학교)
 - ('10) 3/4분기 4.1% → 4/4분기 2.6% → ('11) 2/4분기 7.2% → ('12) 2/4분기 9.8%
 - 학교에 정수기 설치제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수기 또는 냉온수기를 설치하여 사용중인 학교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정수기 관리 및 수질검사 부실에 따른 문제 상존
 - 정수기 사용학교 : ('07) 9,528교 → ('10) 8,658교 → ('12) 8,746교
 - 정수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수기업체 등에 채수부터 검사까지 일임하는 사례 및 수질검사 직전 청소 또는 소독 등 문제점 발생

※ '12년 감사원 주관 학교보건업무 감사시 일선학교에서의 수질검사 부실관리 등에 대한 지적 및 대책마련 요구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4호 및 별표 5에서는 ‘먹는 물 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 일선학교의 관심과 전문성 부족으로 먹는 물 수질기준 초과 가능성 상존
 - 상수도 또는 간이상수도에 의하여 먹는 물을 공급하는 경우 저수조를 경유하지 않고 수도꼭지에 직접 연결토록 규정(곤란한 경우 제외)하고 있으나, 기존학교 중 많은 학교가 저수조를 통해 수도물 공급하고 있어 수도물이 저수조 등에서 체류시간이 과다한 경우 잔류염소의 감소로 미생물 오염 가능성 증대
 - 지하수 등에 의하여 공급되는 먹는 물은 수질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수도물과 정수기 또는 냉·온수기를 통해서 공급되는 물은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부실관리에 대한 인지 및 적기 시설개선 곤란
-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인 우라늄 및 라돈 등에 대한 지속적 실태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추진방향

- 먹는 물의 공급원칙
 - 학생 및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먹는 물은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제공
- 지하수 관리대책
 -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역 상수도의 학교 내 인입을 적극 추진
 - 특히, 수질검사 결과 수질의 변화가 심하거나, 반복적으로 오염물질이 검출되는 학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추진
 -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학교별로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
 - 지하수 수질검사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실시(「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별표5 라목)
 - 정수 또는 소독이후 전 항목 및 일부항목 검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지하수에 대해서는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초과 항목에 따른 조치 강구(타 관정 개발, 초과항목에 따른 정수장치 도입 등)
 - 전 항목 검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항목에 대해서는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 된 경우라도 매분기 별도검사 실시('01 감사원 조치사항)

- 수질검사 결과를 받았다 하더라도 지하수의 수질은 수시로 변화하여 미생물 및 유해물질이 함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끓여서 공급
- 오존살균장치를 경유하여 급식시설 및 음용수로 이용할 경우 브롬산염 발생 최소 및 제거 대책 마련 후 사용
- '11~'12년 조사한 자연방사성물질 함유실태 조사결과 원수에서 적용기준을 초과한 학교의 경우 정수장치 철저 관리
- 지역 상수도의 교내 인입이 불가능한 학교는 지하수 개발 시 지하 암반층 까지 굴착토록 하여 안정된 식수를 학생들에게 공급
- 수돗물 관리대책
 - 신축학교 및 상수도 인입학교는 수돗물을 직결 급수토록 하고, 이미 저수조가 설치된 학교도 수도사업자와 해당 교육청이 협의하여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직결 급수체제로 전환(「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부칙 제2항 준수)
 - 직결급수가 곤란한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 및 운영관리 개선
 - 시설관리개선 : 저수조 용량 축소 또는 수위계 설치 등을 통해 체류시간을 최대한 단축
 - 운영관리개선 : 저수조의 청소주기 단축(반기 1회→분기 1회, 비음용 저수조의 경우 반기 1회) 및 관리자 지정, 점검일지 작성·보관 등 책임관리제 수립·시행
 - 2007 국정감사 지적사항과 같이 먹는 물로 적합하게 공급되는 수돗물에 살균기 설치비를 지원하는 등의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 학교의 수도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등 조치(「수도법」 제33조 제2항, 제3항)
 -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학교 중 저수조를 경유하여 수돗물을 제공하는 시설에 대하여 소독 등 위생조치
 - 수질검사 : 저수조 또는 저수조 최단 수도꼭지 채수/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등 6개 항목(연1회 이상)
 - ⇒ 수질검사 결과는 게시판 게시 또는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안내조치
 - 참고사항 : 소방용수 또는 수세식 화장실 용수 등으로만 사용되는 수질검사 제외. 단, 화장실 세면시설로 연결된 저수조는 검사대상(환경부 회의자료 인용)

- 건축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학교는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옥내급수관에 대하여 2년 주기로 급수관 상태에 대한 검사 실시 일반검사(수질검사 포함) 실시(「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 후속조치 :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또는 철 초과시 급수관 세척 실시(다만,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 검사항목 중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한 개 이상이면 반드시 갱생 또는 교체 실시)
- 상기 수질검사 등 조치사항은 학교먹는물 위생관리의 목적상 사립학교도 동일하게 검사 실시 안내
- 정수기 등 관리대책
 - 학교에 정수기 설치제한
 - 각급 학교에 정수기는 불안정한 지하수를 사용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 지방자치단체(상수도사업본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노후수도관 교체 등 안정적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강구
 - 그 동안 무분별하게 설치한 정수기의 위생상 문제, 수질검사 실시 등 관리업무로 인한 학교 구성원간의 갈등 해소
 - 설치된 정수기는 수질검사 등 관리 철저
 - 정수기(냉·온수기)를 통해 공급되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 의무화(분기 1회)
 - 조사항목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2개 항목(일반세균, 총대장균군)
 - 수질검사는 청소 또는 소독 이후 최소 7일 이상 경과 후 실시
 - ※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정수기는 과감히 철거조치(최종 부적합 또는 년중 2회 이상 1차 부적합 판정된 경우)하고, 학교 수질관리 실태 상시관리를 위하여 수질검사 결과 수합시 직전 청소 또는 소독 여부 확인 조치 강구
 - 축열식 물끓이기 기구 또는 음수기 등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 저장탱크 또는 필터를 사용할 경우 정수기와 동일한 관리기준 적용 고려
- 학교 먹는 물(지하수, 수돗물, 정수기 물)의 관리실태 파악 및 지도·감독 철저
 - 학교 저수조수, 수돗물급수관, 지하수 및 정수기 등에 대한 수질검사 시료채수는 교육청 또는 학교 담당자가 직접 채수·봉인한 후 수질검사기관에 분석의뢰

- 수질검사기관에 요청하여 학교의 수질검사 시 그 결과를 해당학교 뿐만 아니라 시도·감독기관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조치
- ⇒ 교육청에서는 관내 학교의 먹는 물 위생관리 지도 시 활용
- 시·도교육청 자체계획에 따라, 관내 학교에 설치된 정수기 및 냉·온수기 등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로 부실관리 예방
- 기 통보된 학교정수기관리 강화방안(학생건강안전과-8063, 2011. 11. 15)과 같이 관내 정수기 중 10% 이상 정수기(점검 횟수 기준)에 대한 불시 자체 표본검사 실시 및 실적 제출(매분기)
- ※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 '12.12. 5(수) 학생건강증진 담당사무관 협의실시
- 학교정수기 수질검사 부실관리 등의 문제는 '12년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이에 대한 후속조치 철저 및 학교장 등 학교관계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별도 조치 강구(의도적 부실관리 확인시 인사조치 또는 징계 등 적극 조치)

8. 학교 교사(校舎)내 공기 질 등 환경위생 개선

□ 기본방침

- 학교생활의 대부분을 교실에서 보내고 있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실내 공기 질 관리는 매우 중요하여 학교 신축 시부터 건축자재로부터의 오염 가능성을 배제하고, 정기적인 확인 및 관리를 통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쾌적한 실내 환경 제공
- 도로 및 철도·비행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 방지 및 학교 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방안 강구

□ 현 황

- 기존학교는 교사내 특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항목과 항목별 측정시기 등을 차등하여 적용
 - 교사안에서의 공기질 측정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12종에 대하여 대상시설의 구조와 용도, 예상되는 오염물질 등의 발생원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실시
 - ※ 측정율 : ('06) 29.6% → ('07) 82.8% → ('08) 96.3% → ('09) 98.2% → ('12) 99.7%
 - 공기질 측정결과로는 2011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CO₂) 0.4% > 미세먼지(PM₁₀) 0.2% > 폼알데하이드(HCHO) 0.2% 순으로 적정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신축(증·개축)학교는 실내공기 질은 유지항목【폼알데하이드(HCHO), 총휘발성 유기화합물(TVOC)】 외 개별유기화합물(VOCs)에 대한 측정 의무화
 - ※ VOCs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틸렌 등 5종은 측정 후 고지
 - ※ 기준초과 학교는 우선 환기량을 늘리고, Bake-Out(실내 내부를 난방 등으로 일시적으로 온도를 높인 후 환기시키는 방법) 등을 실시한 후 2, 3차 측정
- 최근 「학교보건법」상 교사내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기질 개선 명목으로 공기질 개선을 위한 별도 기계장치 등을 설치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 초래('10년 감사원 지적사항)
- 최근 석면 및 방사성물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실내 학교 교사(校舎)내 비산석면 및 라돈관리의 중요성 증가

□ 추진방향

- 교사(校舎)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등에 각급 학교의 측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측정장비 확보 및 전문인력 확대배치
 - 학교장이 소속 교직원 중에서 지역적 특성이나 당해 학교의 업무형편에 따라 교사(校舎)안에서의 환경위생 업무를 관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지도(업무형편에 따라 복수지정 가능,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 교육감은 학교장이 지정한 환경위생관리자 및 환경위생의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
-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시행철저
 - 시·도교육감은 관내 모든 학교에서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 학교의 장으로부터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는데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지원(연간 지원계획 수립·시행 등)
 -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20호(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를 준수하고,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관리 매뉴얼 활용
- 시·도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점검 결과 적정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단계별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 강구
 - 특히, 공기질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기계적 보조장치 설치 금지
 - 기계적 보조장치 등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되, 사전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결정하고 객관적·과학적으로 검증된 제품을 선정·설치

※ 학교 교사내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지침 준수 철저(학생건강안전과-8747, 2011. 12. 12)
- 신축(증·개축) 및 리모델링 시 교사(校舎)내 환경위생 관련규정 적용 철저
 - 학교설립·인가(학교 설립계획)시에는 「학교보건법」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및 조치

- 학교 신축(증·개축) 및 리모델링 시 사용하는 건축재료 및 가구류 등은 화학물질의 방출이 적은 친환경적 건축자재 사용(설계 단계부터 확인)
 -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금지(학생건강안전과-1401, 2008. 6. 4 참조)
- 신축(증·개축) 및 리모델링 완료시에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및 「학교 교사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의 규정에 의거 공기 질 측정
 - 측정항목 : 7개 항목(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벤젠·톨루엔·에틸벤젠·자일렌·스티렌)
 - ※ 단, 개별유기화합물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신축공동주택 권고기준 준수여부 확인 후 권고기준 초과여부 확인
 - 벤젠($30\mu\text{g}/\text{m}^3$ 이하), 톨루엔($1,000\mu\text{g}/\text{m}^3$ 이하), 에틸벤젠($360\mu\text{g}/\text{m}^3$ 이하), 자일렌($700\mu\text{g}/\text{m}^3$ 이하), 스티렌($300\mu\text{g}/\text{m}^3$ 이하)
 - ※ 특히, 기숙사를 신축(증·개축) 및 리모델링 완료시에는 반드시 개별유기화합물의 기준 준수여부 확인 및 초과여부 확인(100실 이하 2지점, 100실 이상 3지점, 이후 100실 초과시 1지점 추가)
 - 측정기관 : 신축(증·개축) 당해 연도는 환경부령으로 규정한 전문기관에서 실시
 - 공기질 측정시에는 반드시 교육기자재(책상, 걸상 등)가 있는 상태에서 측정을 실시
 - ※ 학교 교사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37호, 2009. 9. 23) 제1장 제5호 나목 참조
- 공기질 유지기준 초과시설은 반드시 저감 조치 후 기준치 이내에서 교사(校舍) 사용
- 학교 교사(교사)내 공기질 관리 강화추진
 - 「학교보건법시행규칙」 개정 추진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강화(개정 완료 이후 적용)
 - ※ 비산석면 :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로 점검대상 확대
 - ※ 라돈 : 지하교실뿐만 아니라 라돈발생이 의심되는 교실로 점검대상 확대
 - 특히, 라돈의 경우 적절한 환기를 통해 실내 라돈농도의 저감이 확인된 만큼 학교 구성원에 대한 주기적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관리 추진

- 학교 신축 또는 리모델링시 라돈가스 저감공법 등으로 설계 추진
- 환기장치 설치 크랙부위 매끔, 창문 개방 등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범위내 우선 조치
- 유치원 공기질 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강구
 - 각 시·도교육청별 유아교육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별도의 유지·관리기준을 정하지 않은 유치원의 경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의2따른 교사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토록 교육 및 홍보 추진
 - ※ 병설유치원의 경우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기질 점검시 유치원 교실 포함 또는 점검지점 1개소 추가 등 검토, 단설 및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 측정항목 및 지점 검토
- 학교 소음피해 방지대책 추진
 - 매년 상반기 중 외부소음으로 인하여 수업에 지장이 있는 학교를 조사한 후 교육청담당공무원이 자가 측정 우선실시(보통소음계 이상)
 - 소음도가 높거나 방음대책 추진대상 학교에 대하여는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학교 또는 교육청이 공식적으로 소음도 측정 의뢰
 - 소음도 측정결과 도로 및 철도소음, 항공기소음 허용기준 초과학교에 대하여는 소음발생원 관리기관에 방음시설 설치요구
 - * 【관련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소음진동관리법」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공향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공향소음 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 소음유발지역, 소음피해(예상)지역에 학교를 나중에 설립한 경우는 학교설립자가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유지비용도 부담하는 것이 원칙
 - 소음피해 예상지역에는 학교 신설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는 학교설립자가 반드시 충분한 방음시설을 학교기본설계에 포함하고, 그 유지비도 학교운영비에 계상하여 지원
 -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소음 방지시설 및 냉방시설을 지원받은 경우는 시설 인수자(학교 및 교육청)가 유지비용을 부담

- 이중창의 노후화로 밀폐성이 떨어지는 학교의 방음창 개·보수 및 냉방시설의 유지보수와 전기료 등의 운영비 지원

※ 학교 소음방지대책 추진방향(학교체육보건급식과-1227 : 2005.11. 7) 참조

※ 군비행장 등 주변 소음피해학교는 기 시행한 조치계획 추진 철저(학교체육보건급식과-2608, 2007.12. 8) 참조

○ 학교 폐기물 처리대책

- 학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교육을 통하여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철저한 분리배출 및 종량제 준수
-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따로 모아서 매각하거나 적극 재활용
-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시·군·구)와 협의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
- 학교의 일반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탁처리 함을 원칙으로 관리
- 외부운반 위탁처리 등 대행조치가 곤란한 지역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적법한 소각시설이 아니면 교내소각 금지

○ 학교 실험실 폐수처리 대책

- 학교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
- 동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초·중학교 및 소규모 학교(이화학실험실의 폐수 배출시설 규모가 100㎡미만인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도 학교실험실 폐수를 일정장소에 수거하여 일괄 위탁처리 하는 방안 마련

○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 개정 추진

- '06년 제정된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에 대한 학교 내 환경변화 및 소관 법령 제·개정에 따른 변화 요인 등을 반영한 매뉴얼 개정 후 배포 예정

9.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교육환경보호제도 관리 철저

□ 기본방침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무단설치 방지 등 효율적인 관리로 학교 보건·위생 및 교육환경 보호제도의 실효성 확보 강화
- 건강하고 쾌적한 학교주변 교육환경 조성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

□ 현 황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지연 및 행정기관의 부당허가 사례
 - 학교신설, 출입문 등의 변경 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누락 또는 재설정 공고 등 업무처리 지연으로 감사 시 적발되는 사례
 - 시·군·구 등 행정기관이 건축 및 영업허가(등록, 신고)시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부당허가 등
- 교육지원청의 정화구역 관리학교 지도·점검 미흡
 - 시·도교육청에서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장의 역할·기능에 대한 지도와 점검 부족
- 학교주변 교육환경의 근본적 보호를 위한 교육환경평가 및 학습환경보호위원회 운영·학습환경조사 제도 운영 미흡
 - 교육환경평가서 검토를 위한 학교보건위원회 운영 및 학습환경보호위원회 활용 실적 다소 미흡
- 학교 교사(校舍)내 환경위생 및 교육환경 보호제도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가로 환경위생 관리 범위가 대폭 확대·강화되었음에도 담당인력이 추가 배치되지 않아 어려움 초래

□ 추진방향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고시업무 철저
 - 학교 설립예정지 부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고시 철저
 - 각급 학교(고등교육기관인 대학 포함)에 대한 정화구역 설정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미설정 학교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고시 관련 자료를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학교주변 토지이용 정보제공 및 정화구역 저촉여부 확인 등 민원인의 행정기관 방문에 따른 불편 해소와 정화구역제도 홍보
 - 학교경계선 및 출입문 변경 등에 따른 정화구역 조정 고시 철저
 - ※ 대학부지 내에 초·중등학교가 같이 있는 경우 학교 급별 법상 금지행위 및 시설이 다르므로 학교별로 정화구역을 설정·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환경평가의 누락 및 학교시설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교육감과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실태점검 및 관리 철저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학교의 장과 교육장은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한 실태점검 실시
 - ※ 관계부처 합동 집중단속(연 2회 정례추진 예정)시 적극 협조
 - 정화구역 실태점검 시 업태위반 사례(예, 일반음식점이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와 같은 영업을 하는 경우) 색출·고발조치
 - 학교별로 정화구역 내 각종업소의 위치를 표시한 정화구역관리도 비치
 - 학교주변 주요상가 건물 등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표식”부착 및 정화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환경 보호제도 홍보
 - 고질적 유해업소의 경우 자치단체장에게 시설철거 등을 위한 적극적 행정조치 요청(행정대집행 등)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
 - 최근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음(특히, 숙박업소, 당구장, 유흥 단란주점 등은 평균 해제율이 75% 이상임)
 - ※ 심의해제율 : '08(59.8%) → '09(62.7%) → '10.6(64.6%) → '11.6(60.9%) → '12.6(59.7%)
 - 지난 15년간 16개 시·도교육청의 전체 행정심판 및 소송건수 중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와 관련된 건수가 76.2%, 26.1% 로 각각 조사됨
 -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시 정화위원의 현장확인 및 철저 분석으로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 필요
 - 정화위원회 심의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학부모 참관조치, 민원인의 기피신청, 학교장 의견을 반영한 재심의 등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법령 개정사항 적극 준수('12. 11월)
- 교육환경평가제도 및 학습환경보호위원회 운영, 학습환경조사 제도 내실화
 - 교육감에게 제출된 평가서는 반드시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통보
 - 학교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재개발·재건축 지역내 포함될 경우 학교의 보건·위생, 학습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학습환경조사를 통한 학습환경 등 지장 초래 유무 사전 확인·조치
 - 지역별, 학교급별 등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평가항목 개선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교육환경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
 - 교육환경평가지원시스템 개발 관련 적극 협조(한국교육개발원 MOU 체결)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내시스템 및 교육환경평가지시스템은 단계적 활용 가능
 - 교육감에게 제출된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한 회신시 보완조건 명확화 조치(조치결과에 대한 자체조치 또는 위원회 심의 필요 여부 등)
- 교육환경평가 심의 후 해당 학교용지의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전 까지 학교설립예정지에 준하여 관리하고, 해당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교육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마련

- 교육청 홈페이지에 예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도를 게재하고, 관련 현황을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금지행위 및 시설 차단
- 민원서비스선진화사업의 일환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 및 결과 통보’ 절차를 온라인서비스(G4C) 로 처리
 - 온라인서비스(G4C) 도입시 신청 및 결과 통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
 - 행정안전부 고시(제2010-77호)에 따라 온라인서비스(G4C)로 민원인이 출력한 심의결과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로 변경('10. 11. 29)
-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환경보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
 -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 개최시 해당 학교용지의 교육환경 적절성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 각급 학교의 환경위생업무를 지원·지도하고, 교육행정기관에서의 교육환경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담당인력 보강

10. 학교 석면관리 강화

□ 기본방침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학교석면건축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
- 시·도교육청별 효율적 석면관리를 위한 석면 해체·제거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및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 현황

- 『학교석면관리종합대책』('08. 9월)에 따라 전국 유·초·중·고(19,815校) 대상 석면실태 전수조사 실시
 - 조사결과 DB(NEIS) 구축 및 석면관리지도 작성·관리
-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시행('12. 4. 29)
 - 석면관리기본계획수립, 건축물 석면의 관리,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관리 등 규정
 - ※ 법 시행 이전 조사를 완료한 학교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인정기준에 따라 보완을 조건으로 인정 가능(1년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청)

□ 추진방향

- 학교건축물 석면조사 및 사후관리 철저
 - 관내 학교 중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험이 우려될 경우 석면 해체·제거 및 그 밖의 명령 및 이행상태 확인
 - 「석면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 및 조치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대집행 및 징수
 - ※ 특히, 슬레이트 등 노후시설물에 대한 철저관리 필요
- 기존 학교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인정신청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건축물석면조사 제외 대상학교 선별 후 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 일괄 인정신청 추진('13. 4. 28 이전)

- 「석면안전관리법」 준수 철저
 - 석면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 등
 - ※ 기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학교시설 후속조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령 및 협의회 자료 참고(학생건강총괄과-2898, 2012. 11. 21)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매뉴얼 마련·보급 추진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관련 학교시설 후속조치를 위한 매뉴얼 마련 및 일선 학교 보급(학생건강총괄과-17, '13. 1. 2 참조)
- 시·도교육청별 학교석면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 관리등급 및 사용연수 등을 고려 석면 해체·제거를 위한 중장기 예산확보 계획 포함
 - ※ 2012년 교과부 국정감사시 시·도교육청별 석면관리 종합대책 부재에 대한 지적 및 중장기 로드맵 마련 요구

Ⅲ. 급식관리

11.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12.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
13. 영양관리 및 식생활지도 강화
14.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15.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 학교급식비 지원
16. 학교급식 지도·감독 및 행정지원 강화
17.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세부과제 추진

11.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 기본방침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와 영양관리 철저 등 급식운영 관리의 내실화
- 학부모 참여 확대로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 현황

- 2006. 7월, 「학교급식법」 전부 개정으로 급식운영 및 안전관리체제 개선
 - 직영급식 원칙으로 급식운영방식 개선, 학교급식 운영평가제 도입 등
- 2012년 전체학교의 99.9%인 11,476개교에서 학생 697만명 급식 실시
 - 연간 급식경비 4조 9,373억원, 영양사 등 급식종사자 72,527명

□ 추진방향

가. 학교급식 운영방식 개선

- 2003년부터 「학교급식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위탁급식 직영전환 추진
- 2006. 7월,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07년 이후 6년간 2,032개교 직영전환
 - ⇒ 직영급식 : ('06) 84.6%(9,125개교) → ('12) 97.2%(11,157개교)
- 학교급식 운영방식을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

나. 학교급식 업무위탁 등 운영방법의 내실화

- 「학교급식법」 제15조에 따라 학교급식은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분위탁 또는 급식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 위탁급식 허용 가능
 - 특히, 초·중학교에서 업무위탁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교육청 승인
- 조리·배식 및 세척업무만 위탁하는 부분위탁이나 전부위탁의 경우에도 급식 품질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급식운영 내실화 방안 강구

다. 교육청 단위 학교급식위원회 설치 및 급식점검단 운영 활성화

- 시·도교육청에 ‘학교급식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 「학교급식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원장(부교육감) 등 15인 이내로 구성
 -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및 급식경비 지원 등에 관한 심의기능 수행
-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급식 점검단’ 운영 내실화
 - 학교급식법령에 따른 연 2회 정기 위생·안전점검 외에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급식 점검단’을 운영하여 월 1회 이상 모니터링 차원의 지도점검 실시
 - 점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교육실시, 필요한 경비 등 행·재정적 지원강화
 - 식약청 및 자치단체 합동으로 식재료업체, 위탁업체 등 위생상태 불시점검

라. 학교단위 급식수요자 참여 확대

- 학교급식 소위원회 구성·운영 법정화
 - 시·도교육청은 조례를 개정하여 ‘급식소위’ 법정화, 학교는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급식소위’ 의무화, 학부모 참여제도 구축 및 운영 활성화
 - 위원회에 영양(교)사 등을 간사로 참여(‘05.12월, 국가청렴위 권고)
 - 학교단위 ‘급식모니터’는 ‘급식소위’에서 흡수하여 운영하되, 참여 가능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모니터요원 인력풀’을 구성·활용
- 열린 학교급식 운영
 - 홈페이지에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급식게시판’ 운영, 학생과 학부모의 급식불만 등 의견수렴 및 개선에 반영
 -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보호자 부담경감을 위해 매 학기말 기준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및 매 학년도말 기준 ‘급식 실시현황’ 공개
 - 학교별로 ‘학교급식의 날’을 운영하여 급식참관, 시식회 등을 통해 급식에 대한 이해증진 및 참여 유도

마. 학교급식 운영평가 및 표창

- 학교급식 운영평가 실시(학교급식법 제18조)
 - 급식운영의 내실화와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학교급식 운영평가 점검표 및 점검항목에 따라 2학기중 자체평가 실시

- 급식운영 우수교(업체) 및 유공자 표창
 - 학교급식 운영평가결과 우수교 및 유공자 등에 대하여 표창 실시

바. 학교급식 운영 및 공급자의 책무성 제고

- 보호자(수익자) 부담 급식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시·도교육청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이·전용 제한
- 부정·불량 식재료 납품업체(위탁업체) 처벌 규정 준수 및 공개
 - 「학교급식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 규정(법 제23조 내지 제25조) 준수
 -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위반 등 급식비리 적발 시 제재조치 및 그 내용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 급식관련 기부 요구자, 금품·향응제공자와 제공 받은 자 모두 엄중 처벌
 - 시·도교육청은 행정사무감사 착안사항으로 지정하여 청렴도 강화
- 학교급식비 연체 및 미납자에 대한 교육적인 징수대책 강구
 - 담임교사의 관심을 제고하고, 보호자 전화상담 등을 통해 건전한 학교경영 차원에서 합리적인 급식비 징수방안 모색
 - 급식소 입구에 카드식별기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 불가피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들의 자존감 보호 대책 강구

사. 위탁급식 운영관리 지도·감독 강화

- 부분위탁 또는 전부위탁 학교의 급식운영 투명성 확보와 급식만족도 향상 방안 강구
- 위탁급식학교 중 직영전환을 희망하고 여건이 조성되는 학교는 시·도교육청에서 급식시설 개선비 등을 적극 지원하되, 외부운반 위탁급식을 우선하여 개선
 - 직영급식이 곤란한 학교는 직영과 위탁의 장점을 절충한 ‘부분위탁’ 급식 운영방식도 검토(학교급식법 제15조)
- 위탁급식 학교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급식시스템' 사용 의무화
 - 위탁급식 업체와의 계약 시 NEIS '급식시스템' 사용을 조건으로 제시
 - 식재료 원산지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철저

12.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

□ 기본방침

- 학교 식중독 등 위생 및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
-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위생관리기법인 HACCP 개념의 『학교급식 위생관리 시스템』 적용 내실화로 학교단위 자주위생관리 능력 배양

□ 현 황

- 2000년부터 HACCP 개념의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 도입
 - ※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서」 발간·보급(2000. 12월, 제3차 개정 2010. 1월)
- 2003년부터 위생·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 개선사업 추진
 - ※ 「학교급식시설 개선 자료집」 발간·보급(2006. 3월)
- 2007. 1월, 「학교급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식재료 품질기준, 영양 관리기준, 위생·안전관리기준 강화

□ 추진방향

가.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 개선

- HACCP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획기적인 급식시설 개선 추진
 - 전처리실, 조리실, 세척실 등 작업 공간 구분, 교차오염 방지
 - 다기능오븐기, 보온·보냉 배식대 등 능률적인 급식기구 확충
 - 시·도교육청별로 10년이상 경과된 노후 급식시설 실태를 조사하여 연차적 계획수립 및 지원, 소요예산은 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하여 확보
 - ※ 2015년까지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100% 목표 추진
-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식당구성 공간 확보 방안 모색
 - 저학년 전용식당 마련으로 학부모 배식 도우미 반강제적 동원 금지
 - 식당시설은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

- 식당 미설치로 복도배식 중인 학교는 우선 교실배식으로 전환토록 지도
 - ※ 복도 배식과정에서 혼란 및 무질서, 위생관리 소홀문제 등 개선
- 특히, 급식실 종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한 "안전한 급식실 조성을 위한 시설기준"을 설계과정에서 반영토록 조치

나. 식중독 사고 원인규명을 위한 보존식 보관관리 철저

- 학교별 충분한 용량과 기능을 갖춘 보존식 전용 냉동고 확충
- 보존식 보관 및 관리 철저
 - 보존식은 -18℃에서 144시간(6일) 보관, 사고발생시 소독처리 등 훼손 금지
 - 역학조사 관계기관에 보존식 인계시 수거증을 받고 인계(책임소재 명확화)

다. 식재료 원산지 심의·확인 및 표시제 시행

- 식재료 원산지 등 구체적인 품질기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의무화
 - 농·수·축산물 등 주요 식재료의 원산지와 품질등급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결정(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개정, '09.2.25)
 - ※ 일본 방사능 누출사고 등으로 초래되는 수입산 식재료에 대한 학부모 우려 해소
- 식재료 구매시 원산지와 품질기준 명시 및 검수 철저
 - 식재료 구매요구서에 반드시 원산지 및 품질기준을 명시토록 하고, 검수는 영양(교)사 등 학교관계자가 입회하여 복수 대면검수 실시
- 학교급식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제 시행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및 그 가공품, 쌀, 배추김치, 수산물(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에 대한 원산지 표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1.11.3)
 - ※ NEIS 급식시스템 출력기능을 활용하여 원산지가 일괄 표시된 월간 식단표는 가정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공개, 주간식단표는 교실 또는 식당입구 등에 게시
- 쇠고기 등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 위·변조 방지대책 강화
 - 학교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물검수 안심서비스' 활용을 의무화하여 위·변조 의심업체는 즉시 거래를 중지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 축산물검수 안심서비스 운영 : 축산물품질평가원(www.ekape.or.kr)

- 시·도교육청은 농촌진흥청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등과 협의하여 식재료 검수요령 등 교육 실시

라. 급식종사자 개인위생 및 교육 강화

- 학교급식종사자는 6월마다 1회 이상 건강검진(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 교육청과 학교의 급식업무 담당자에 대한 위생교육 강화
- 교육청별 학교급식종사자 직종별 ‘직무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학교급식 위생관리 실명제’ 실시(‘03. 4월 도입)
- 1일 2식 이상 급식제공 학교는 조·중·석식 급식관리 책임자를 각각 지정·운영(남은 음식 재사용금지, 인수인계 및 보존식 보관 철저 등)

마.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 등 적용의 내실화

- HACCP 기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학교급식시설 개선
- 학교급식 HACCP 관리기준 정비, 전문가 현장지도 실시
- 식재료업체, 외부운반급식업체 선정 시 HACCP시스템 적용여부 확인
- 「학교 식중독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철저
 - 식중독 확산 조기차단을 위해 식재료 공급업체 계약 변동사항 등을 지체 없이 시스템에 입력

바. 학교급식관련시설 위생·안전점검 강화

- 학교급식에 대한 연2회 불시 위생·안전점검 강화(83개 항목, DB화 관리)
- 급식업체의 식재료 품질 및 유통과정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 학교 밖의 급식관련 시설과 식재료공급업소에 대하여는 식약청 및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교육청 점검단, 식약청, 시군구, 소비자식품감시원)
- 점검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해당업체 제재방안 강구

사. '학교 식중독 대책반' 구성·운영

- 학교 식중독 발생 시 원인 규명을 통한 재발방지를 위하여 '대책반' 운영 필요
 - 대책반장은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급식담당과장이 되고, 방역기관 담당자, 학계전문가, 전문교육을 이수한 급식담당자 등 5인 이내로 구성
- 학교 식중독 발생 시 교육청의 전문교육 이수자를 역학조사반에 합류시켜 신속한 후속 조치와 행정지원을 통해 사고원인 규명활동 강화
 - '식중독 원인조사반' 전문교육 적극 참여('11년부터 식약청 교육과 통합, 한국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 학교급식 위생사고 발생 시 초동단계 신속대응 철저

- 학교단위 식중독 의심환자 신속 보고체계 운영
 - 학교장은 식중독 의심환자 2명이상 동시발생 인지즉시 보건소(교육청)에 신고
 - 보고(신고) 방법은 유선 또는 E-메일, 팩스 등으로 신속·정확하게 조치
 - ※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서』 제9장 “식중독 발생 시 대처요령” 숙지
- '학교안전공제회'의 학교급식 위생사고 보상규정 적용 및 홍보강화
- 식중독 발생사실 은폐·축소 및 지연 보고 시 엄중 문책조치 시행
 - 식품위생법령 및 학교급식법령상 처벌(징계)기준 엄격 적용
 - 교육청과 학교는 원인규명을 위한 보건소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

자. 학교급식소내 안전사고 예방관리 철저

- 학교급식 종사자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 안전사고 예방요령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내용을 숙지 할 수 있도록 안전 보건교육 월 2시간 이상 실시(학교자체 또는 유관기관 협조)
 - 교육실적 및 홍보자료 비치, 학교급식소 안전보건관리 업무담당자 지정
- 학교급식소 재해발생 위험요인 개선 및 예방 활동 강화
 - 작업장 및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방호장치의 설치, 작업방법 등 포함), 전기가스 등의 정기점검, 비상구의 적정 설치 및 표시,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등 개선

-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학교급식소내에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 및 유해·위험시설·설비에 대한 경고표지 게시, 사고 빈발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협조를 받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 고용노동부의 "학교급식소 안전·보건 점검표 및 해설서"를 활용하여 학교 자체적으로 안전·보건점검 실시
 - ※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874('12.4.23), 1580('12.7.25) 참조
- 교육청에서는 학교별 연2회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시 안전·보건 자율 점검 실시여부 및 개선조치 결과 확인

차. 식기세척제 잔류여부 확인검사 실시

- 식기 등 급식기구 세척에 사용하는 세척제 및 행굼 보조제는 보건복지부 고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용법에 맞게 사용
 - 식기 등 급식기구에 세척제가 잔류되지 않도록 음용에 적합한 물로 반드시 행굼 후 사용
- 월 1회이상 세척제 잔류여부에 대해 PH시험지 등을 이용하여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확인검사 실시
 - 검사결과 세척제 잔류가 확인된 경우는 행굼작업을 강화하고, 세척기 등의 이상여부 확인 및 근본적인 개선대책 강구
 - ※ 검사로인해 시약이 묻은 식기 등 급식기구는 다시 위생적으로 세척·소독
 - 검사내용(실시일, 검사결과 등)을 CCP기록지(CP8A) 하단에 기록 유지
- PH시험지 등 검사시약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되, 검사담당자 대상으로 보관 및 취급요령 등에 대한 교육 실시(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등)
 - ※ PH시험지법 등 잔류여부 확인 검사 권장지침 : 학생건강안전과-8745('11.12.12) 참조

13. 영양관리 및 식생활지도 강화

□ 기본방침

-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하여 편식교정 등 바람직한 식생활습관 형성 및 평생건강의 기틀 마련
- 과학적이고 건강지향적인 영양관리로 학생의 건강증진과 자기건강 관리 및 올바른 식사선택 능력 배양

□ 현 황

- 2006. 7월, 「학교급식법」 전부개정으로 영양교사 배치 및 식생활 지도와 영양상담을 실시하도록 규정
- 2007. 1월, 「학교급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성장발달단계에 맞는 연령대별·성별 ‘학교급식의 영양기준량’ 설정
- 2008. 3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2009.11월 「식생활교육지원법」, 2010. 3월 「국민영양관리법」 제정으로 영양 및 식생활지도 강화

□ 추진방향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 강화

- 건강 지향적이며 성장발달 단계에 적합한 영양관리
 -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 준수(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3)
 - 곡류 및 채소류·과일류·어육류·콩류·유제품 등 다양한 식품 사용
 - 염분·유지류·단순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과다 사용 제한
 -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하고 다양한 조리방법 활용
- 나트륨·트랜스지방 제한 및 유해식품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 저염식단 제공 및 나트륨 섭취량 저감화를 위한 교육 실시

- 쇼트닝·마가린 등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식품제공 최소화
- 부정·불량, 유해식품 매식근절을 위한 학생교육 및 학부모 홍보 실시
- 학교 우유급식 확대 및 운영관리 철저
 - 성장기 학생들에 대한 칼슘(Ca) 영양공급량 충족으로 체위향상에 기여
 - 우유를 버리거나 남기는 일이 없도록 담임교사가 관심을 갖고 적극 지도
 - 우유급식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선택권 보장 및 우유급식 저변확대 노력
 -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식여부 결정
 - 농식품부는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학교 우유급식 지원(낙농진흥법 제3조)

나. 올바른 식사선택 능력 배양

- 학교급식 ‘영양표시제’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시행
 - 학생들에게 영양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자기 식생활 관리능력 함양
 - 식당 배식구 옆 또는 각 교실에 식단별 주요 영양량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여 게시하고, 가정통보 및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
 - ※ 알레르기 유발식품(12종, 식약청 고시) :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 '13년부터 아황산염 추가
 -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운영 방안 및 매뉴얼 통보('12. 9월)
 - ※ 알레르기 유발식품 12종 제공시 식단표에 자동출력 되도록 NEIS 급식시스템 개선 완료 ('13년 상반기에 아황산염 NEIS에 추가 반영예정)
 - 교육청은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시행여부 확인 등을 통해 안정적 정착지도
 - 학교별 콩·우유·계란 등 식품 알레르기 유질환자를 조사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대체식품 제공 노력
- ‘식생활교육실’ 운영 등 특별활동 강화
 - 여유교실이 있는 학교에 아늑하고 쾌적한 분위기의 ‘식생활교육실’을 구성하여 학급별로 담임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식사하면서 식생활 체험교육 실시

- 창의적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식생활에 대한 관심제고 및 기초 조리 능력 배양
- 한국형 전통식문화계승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도농업기술원(센터) 협조]

다. 영양교사 배치 및 식생활 교육·영양상담 실시

- 급식시설·설비를 갖춘 학교에 영양교사 배치방안 강구(사립학교 포함)
 -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영양(교)사 대상 영양상담 등 전문교육 실시
 - 학교 홈페이지 및 급식관리실 등에 '영양상담실' 개설·운영
-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교육 강화
 - 매년 초 "학교교육(운영)계획" 수립시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계획 반영
 - ※ 관련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토요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과 영양,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관리,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월별 추진계획 수립·교육 실시(월 2회 이상)
 - ※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교육내용과 방법 : <참고자료 7> 참조
 - 교육감 또는 교육장 지정 급식시범(연구)학교 운영
- 학교 영양상담 프로그램 운영
 - 비만·당뇨·고혈압 등 식사조절 필요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상담실시
 - '학생 비만예방 프로그램' 적극 활용('06년 보급)

라. 학교급식관련 교직원 연수 및 생활교육으로 정착

- 학교장 및 교감·교사, 행정직원 대상 연수과정에 학교급식 운영관리 반영
- 담임교사 임장식사를 통한 밥상머리 교육, 매주 수요일 '잔반통 없는 날' 운영 등 잔반 안남기기 교육, 학부모 대상 급식관련 정보제공
- '아침밥 먹고 등교하기' 지도 등으로 아침결식 해소 및 쌀 소비확대 협조

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 및 홍보 강화

-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일평균 총 급식인원 100명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는 음식물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규정

- (학교대책) 학교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화를 위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대책을 수립·시행
 - 학생들의 기호도 조사·분석 및 적정량 조리·배식으로 잔반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
 - 매주 1일 이상 “잔반통 없는 날”을 지정·운영, 우수학급 표창 등을 통하여 잔반을 남기지 않는 학교급식 운영관리 방안 강구
 - 편식교정 등 식사지도를 통한 음식물 남기지 않기 교육 실시
 - 학생 개인별 식사량 조절을 위하여 배식조절대 비치 및 활용
 -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수거하여 축산농가에 가축사료 제공 등 가급적 재활용되도록 하여 발생량 최소화
 - 일부학교는 종량제에 따라 자치단체의 수거차량으로 반출하거나, 잔반처리기를 활용하여 자체 소멸화 등으로 처리
 - 학교 홈페이지, 급식게시판 등을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강화

14.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 기본방침

-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 사용으로 급식의 질 향상 및 만족도 제고
- 식자재 구매관련 비리예방 및 투명성 확보와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

□ 현황

- 2006년 자치단체장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근거 마련(학교급식법 제5조)
 - ※ 2012년 기준 서울, 경기 등 23 곳에서 지원센터 운영(2,497개교 이용)
- 「학교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 시행('10.7월)
- 관계부처 합동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및 급식환경 개선대책」 마련('12.8월)

□ 추진방향

가. 학교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

-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준수(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2)
- 식재료 선정과 조달과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
 - 교육비리 근절과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위해 전자조달 확대 및 학교급식 지원센터 이용 등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
 - 학교별 계약종료시기 조정을 통해 지역별 식재료 공동구매 확대
 - 식재료 구매 시 원산지과 규격 및 품질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를 검수 지침으로 하여 원산지 확인 등 안전과 품질에 중점을 두어 검수철저
- 안전과 품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식재료 구매방법 적용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등 적격 업체를 통해서 식재료 구매
- 전자조달을 통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준수 의무화('12.9월~)
 - 학교는 적절한 가격으로 질 높은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적 최저가 방식의 낙찰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입찰공고시 동 내용 포함하여 공고

- 자치단체별 지역거점에 ‘급식지원센터’ 운영방안 협조
 - 학교급식법 제5조에서 자치단체장 소속하에 급식지원센터 운영근거 규정
 - 산지유통센터(APC) 사업과 연계하거나, 나주, 순천 등 국내 유사센터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벤치마킹
 -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농어촌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건강증진과 수입 농·축·수산물에 효과적 대응
 -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실태 및 활성화방안 정책연구 보고서 참조(‘11.1월)

나. 우수 식재료 사용 확대

-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 사용 확대
 - HACCP 및 GAP(농산물 우수관리) 인증품 등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 생산자단체 직거래, 공동구매 및 계약생산 등 추진으로 유통비용 절감
-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조체제 강화
 - 자치단체의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교육청 담당과장 등이 참여
 - 자기고장 농·축·수산물(로컬푸드) 사용운동 전개 등 소비촉진 유도
 - ※ 일본은 학교급식법에 근거가 없어도 학교와 자치단체가 협조하여 자기고장 농산물 사용(地産地消) 운동을 활발히 전개
 -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지역의 생산자 표시(실명제) 및 농촌진흥청에서 지정한 ‘교육농장’ 체험학습 등 농가를 생활교육의 장으로 활용
 - ※ 1교1촌 자매결연 등 도·농 교류 농촌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적극권장

15.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 학교급식비 지원

□ 기본방침

-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 및 생활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학생들에게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
-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

□ 현 황

- 2005년부터 급식비지원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소요예산은 지방교육재정에서 시·도교육청이 확보하여 지원사업 추진
- 토·공휴일 및 방학기간 급식지원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자치단체가 담당하나 학기 중 토·공휴일의 중식지원 예산은 교육청이 부담
- 2010년 지방선거 이후, 경기도 과천 등 일부지역에서 일반학생 대상 무상급식이 다른 지역까지 점진적으로 확대<'12년 총 397만명에게 1조 9,450억원>

□ 추진방향

가. 2013년도 정책목표

- **【저소득층】** 대상학생의 100% 수준인 114만명에게 학교급식비 지원
 - ※ 최저생계비 130%이하 저소득층자녀 전원
- **【농 어 촌】** 농어촌지역 초·중·고학생 전원에게 학교급식비 전액지원 추진

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과 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시설 수용학생, 한부모자녀, 소년소녀가장 및 최저생계비 130%이하 저소득층자녀 등 학교급식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 ※ **최저생계비**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며 '13년도 4인가구 최저생계비는 월평균 가구소득인정액 1,546천원(130%는 2,020천원 수준임)
- 학생 자존감 보호 및 공정한 교육비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

- 신청 접수업무 위임(학교 → 읍면동 주민센터) 및 1회 신청으로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도록 NEIS-사통망(사회복지통합관리망) 연계 구축('13.2월~)
- 보호자가 온라인으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포 사이트"에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우편, 팩스 불가)
 - ※ 사이트 주소는 2013년 2월초 안내(예정) 및 보호자 모두 공인인증서 필요
- 사통망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 및 초기 결정 후 학교에 통보, 학교(NEIS)에서 대상자 최종 결정

다. 급식지원 방법 및 소요예산 확보 등

- 급식지원 방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책정된 ‘급식비 보호자 부담액’을 기준으로 지원(학교는 급식지원비에서 보호자 부담금을 대체)
- 소외계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 소요예산 확보 및 집행관리 철저
 - 시·도교육청은 확대되는 급식비지원 소요예산 확보 철저 및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
 - 국립학교는 해당 학교에서 저소득층자녀 등에 대한 급식비 지원 소요예산을 학교운영비에 편성하여 지원('05년부터 이양, 시·도교육청은 행정업무 협조)
- 급식비지원 대상자에 대한 심리적·교육적 배려 강화
 - 공개적 노출 금지, 심리적 상처와 낙인감 방지를 위한 상담지도 등 특별 배려

라. 자치단체의 토·공휴일 및 방학기간 학교밖 급식지원 적극 협조

- 교육청은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토·공휴일 및 방학기간 학교밖 결식학생 급식지원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
- 교육청 및 학교에서는 토·공휴일 및 방학중 지자체별 급식지원 현황을 파악·행정협조 등 지원방안 모색
- 지자체 ‘아동급식위원회’ 참여 및 학교의 급식시설 이용 요청시 적극 협조

16. 학교급식 지도·감독 및 행정지원 강화

□ 기본방침

-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감독체제 구축으로 급식시스템 개선
- 학교급식 현장의 급식관련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학교의 업무부담 경감

□ 현 황

- 학교급식은 위생, 영양, 식품, 시설·설비, 예산, 인사관리 등 여러 요소가 연결되어 상호 작용하는 시스템
 - 급식예산은 단위학교 예산의 60%이상으로 계약 등 행정업무 과다
- 교육청의 급식행정 담당인력인 식품위생직공무원을 영양교사로 전환하여 일선학교에 배치함에 따라 급식행정 전문인력 부족
 - 1996년 이전에는 급식전담직원(영양사)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배치하였으나, 공무원 증원억제 방침으로 비정규직 배치, 2007. 7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 추진방향

가. 과학적인 급식관리 기술지원 체제구축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학교급식 지원행정 담당인력 보강
 - 급식위생·안전점검 등 식중독 예방관리 기술지원 강화
- 학교급식 위생 및 경영관리지원기구 운영방안 강구
 - 학교급식 현장에 필요한 급식관리기술 개발보급 및 위생 안전점검, 급식운영 평가,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업무지원 강화(예, 서울시학교보건진흥원)
- 교육청 등 홈페이지에 학교급식 정보센터 설치·운영
 - 학교급식과 관련한 각종 전문정보를 제공하고, 의문사항 등 질의응답

나. 학교급식 지도·감독 및 행정지원 인력보강

- 학교급식 전담부서 설치 및 급식행정 담당인력 보강

- 학교급식법 전부개정으로 위생·안전점검 등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급식관련 행정업무 증가에 따른 능동적 대응체계 마련
- 식재료 품질기준 및 영양기준, 위생·안전기준 준수여부 확인, 예측 불가능한 식중독사고 대응, 식품수거검사 등에 효율적 수행 필요

다. 학교급식 종사자 처우개선

- 소속감 및 업무에 대한 책임감·전문성 강화를 위해 고용안정 추진
 - 비정규직 급식종사자 초·중등학교 회계직원으로 전환 추진
 - 시간외 근무 시 수당지급, 직계존비속의 경조사 시 특별휴가 부여
- 직무의 중요도와 업무량, 석식포함 2식 제공, 기숙사 운영 등을 감안하여 적정인원 배치 및 교대근무 등 근로기준법에 맞도록 처우개선
- 학교회계직원 배치 학교에 정규직을 배치할 경우는 기존직원의 고용안정 방안도 함께 고려
- 급식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 시·도교육청별로 학교급식 여건을 고려한 조리종사원 배치기준 시행
 - 농촌지역 등 소규모 학교에도 조리인력 적정배치 및 식기세척기·다기능 오븐기 등 능률적인 급식기구 확충 지원
 - 조리실 냉방시설 및 탈의실, 휴게실, 샤워장 등 환경개선 추진
- 급식종사자 ‘대체인력 풀’ 운영으로 조리원 질병 등 긴급한 휴가사용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방안 강구
- 조리종사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 질병, 장애 등의 재해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보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및 지원
- 조리사·조리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

라. 학교급식 운영개선 및 연구활동 지원

- 학부모 배식도우미 동원 및 강제적 우유급식은 금지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서 합리적 대안 모색
- 학교급식연구회 등 급식관련 연구조직·운영 및 행·재정 지원 확대

17.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세부과제 추진

□ 추진배경

- 2006. 6월, 수도권지역 위탁급식 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¹⁾ 발생으로 「학교급식법」 전부 개정
- 국무총리 지시로 ‘학교급식시설 전수점검’ 및 ‘감사원 특별감사’ 결과 지적 사항 개선 등 변화된 급식환경을 반영하여 ‘07~’11년까지 5년간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 추진
- 2008. 12월,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으로 국무총리실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설치 및 관계부처 합동 “식품안전관리계획” 수립·추진

□ 주요내용

- 2007~2011년까지 5개년 계획 기간 내 매년말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평가 실시
 - 2011년에는 지난 5년간의 추진상황 종합 평가대회 개최(11.11.18)
- 2012년부터는 국무총리실(식품안전정책위원회) 주관 관계부처 합동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3년단위) 및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1년단위)에 ‘학교급식 개선과제’ 통합 추진, 점검·평가 실시

| 과제명 | 4-3.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 | |
|------|--------------------------------|---|
| 세부과제 | 4-3-1.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 개선 - 매년 700개교씩 현대화(지방교육재정) |
| | 4-3-2.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강화 |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불시점검 실시 ·교육청별 ‘학교급식 점검단’ 운영 |
| | 4-3-3.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 | ·식재료 구매 비대면 전자계약 확대 ·인근 학교간 식재료 공동구매 확산 |
| | 4-3-4. 학교 식생활 교육 및 영양 관리 강화 | ·학교 교육을 통한 식생활 지도 강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도입 |

1) 46개교 3,613명의 설사환자 발생(CJ푸드시스템 위탁급식 31개교 2,921명, 기타업체의 위탁급식 등 15개교 692명), CJ푸드로부터 식재료를 공급받던 학교 등 총 107개교 급식중단, 11만여명 도시락 지참

IV. 행정사항

1. 연간 주요행사 및 일정
2. 보고 사항

1. 연간 주요행상 및 일정

□ 「학교보건법」 전문개정 추진

- 법령 분류체계 재구성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 추진
 - 교육환경보호제도(정화구역, 교육환경평가제도, 학습환경보호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규정 재검토
 -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등 외부 기관의 개정 권고사항에 대한 반영
- 개정계획(안)
 - 개정계획(안)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13. 2) → 입법예고('13. 4) → 국회제출('13. 7) → 공포('13. 12) → 시행('14. 3)

□ 2013년 학교 건강증진사업 경연대회 개최(안)

- (목적) 지역 및 학교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고, 관련 유공자 격려
- (공모분야 및 방법) 학교보건 전반(흡연·음주 예방, 개인위생, 아토피·천식예방, 올바른 성행태, 식습관, 정신건강, 신체활동, 중독예방, 안전사고 예방 등)에 걸쳐 우수사례를 공모하고, 이를 평가하여 시상
 - 응모대상 :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교직원, 교육청 관계자 등
 - 응모방법 : 우수사례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공모기한(9월경)내 제출받아 서류심사 후 평가
- ※ 세부사업계획은 추후 통보 예정
- (협조사항) 시·도교육청에서는 각급학교에 동 사업의 취지 등을 홍보하여 관심있는 교직원 등이 사전준비 후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 학생 건강증진 분야 국외연수 추진(예정)

- (목적) 학교건강증진 관련 해외선진지 견학(연수)을 통해 제반실태를 파악 함은 물론 담당업무에 대한 소양 및 전문지식 함양
- (기본방침) 연수목적에 고려하여 학회 등에 위탁하는 방안 검토, 연수대상자 선정 및 소요예산 집행은 시·도교육청에서 실시, 충실한 연수를 위하여 사전과제 부여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연수계획) 시·도교육청의 참여의사 확인 후 유관기관 및 관련학회 등과 협의하여 추후결정 예정('13. 2/4분기 예정)
- 해외 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도교육청은 확보 예산액, 대상인원, 기타 연수 주제 및 대상국가 등을 추천('13. 2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학생건강증진분야 유공자 표창

- (목적) 「2013년 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준수 및 기타 주요건 정책과제 추진 등에 크게 기여한 우수학교(기관, 단체)와 유공자를 널리 발굴하여 정부포상 실시
- (대상) 학생 건강증진분야 우수학교(기관, 단체) 및 유공자
 - 각급학교, 교육청, 기관(단체) 및 직종에 관계없이 해당분야 유공자(교직원, 일반직, 민간인, 지역인사 등도 포함)
 - 표창수량 : 미정(추후 결정시 기본계획 포함 별도 통보 예정)
- (일정) '13. 10월 대상자 추천, '13. 12월 표창수여

□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워크숍 및 연수회 개최(예정)

| 구 분 | 주 요 내 용 | 일 정 | 대 상 |
|-------------|-----------------------------------|-----------|--------------------|
| 학교보건관계자 워크숍 | 학교보건분야 주요업무 정책방향 설명 및 우수추진사례 공유 등 | '13. 1월 말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 |
| 학교급식관계자 연수회 | 학교급식분야 정책설명 및 우수사례 공유 등 | '13. 6월 중 | 교육청 및 학교관계자 |

※ 세부 추진계획은 확정 후 별도 안내 예정

□ 학교건강증진 담당관 협의체 구성 및 정기회의 개최

- 17개 시·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 담당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각종 현안 토의 및 정보 교류
 - 대상 : 17개 시·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 담당 사무관 및 장학관
 - 정기회의 : 분기 1회(필요시 임시회의 개최)
 - 주요내용 : 학생건강증진 관련 현안 토의 및 각종 정보 공유
 - 주관순서 : 1분기(경기), 2분기(대전), 3분기(강원), 4분기(울산)

2. 보고 사항

○ 보고 목록

< 보건관리 분야 >

| 순번 | 보고 사항 | 보고기한 | 지정서식 | 비고 |
|----|---------------------------|-----------------------------|-------|---------|
| 1 | 학생별도검사 추진실적 | 2013. 12. 28 | 서식 1호 | 엑셀서식 보고 |
| 2 | 흡연·음주 등 학생약물남용 예방 추진실적 | 매반기말 기준 익월 5일 | 서식 2호 | |
| 3 | 학생 건강한 체중관리 사업 추진실적 | 매반기말 기준 익월 5일 | 서식 3호 | |
| 4 | 학교와 보건소 연계 학생건강 관리사업 전개실적 | 매반기말 기준 익월 5일 | 서식 4호 | |
| 5 | 학생 건강검진 추진 현황 | 2013. 12. 28 | 서식 5호 | 엑셀서식 보고 |
| 6 | 학교보건 연구(시범) 학교 지정 현황 | 2013. 5. 31 | 서식 6호 | 엑셀서식 보고 |
| 7 | 학교보건실 설치 현황 보고 | 2013. 5. 31 | 서식 7호 | 엑셀서식 보고 |
| 8 | 학생건강검사 결과 처리 현황 보고 | 2013. 12. 28 | 서식 8호 | 엑셀서식 보고 |
| 9 | 학교 보건교육실시 현황 | 2013. 5. 31 2013. 12. 27 | 서식 9호 | 엑셀서식 보고 |

< 환경관리 분야 >

| 순번 | 보고 사항 | 보고기한 | 지정서식 | 비고 |
|----|--------------------------|-----------------------------|-------|-------------------------|
| 1 | 학교 교사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실적 | 2013. 7. 10 2013. 12. 31 | 서식 1호 | NEIS 보고 병행 |
| 2 | 학교먹는물 관리실적 | 매반기말 기준 익월 5일 | 서식 2호 | NEIS 보고 병행 |
| 3 | 학교주변 유해환경정비 추진현황 | 2013. 7. 10 2013. 12. 31 | 서식 3호 | NEIS 보고 병행 |
| 4 | 학교정화구역 내 각종업소현황 | 2013. 6. 30 | 서식 4호 | NEIS 보고 병행 |
| 5 | 2013년도 학교환경위생 정화관련 소송현황 | 2014. 2. 28 | 서식 5호 | 고발요령 및 절차 <참고자료1 참조> |

< 급식관리 분야 >

| 순번 | 보 고 사 항 | 보고기한 | 지정서식 | 비고 |
|----|---|--------------------------|--|--|
| 1 | 2013년도 학교급식비 지원 계획 및 실적보고 | 2013. 4. 5 2014. 2.28 | 서식 1호 | |
| 2 | 자치단체의 우수농산물 급식지원계획 및 실적보고 | 2013. 4. 5 2014. 2.28 | 서식 2호 | |
| 3 | 학교급식 위생관리대책 추진상황 보고 | 2013. 7.31 2014. 1. 4 | 서식 3호 | 국립학교 포함 |
| 4 | 학교급식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보고 | 발생즉시 | 서식 4호 | 동일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증상 환자 2인이상 발생시(전화후 메일보고) |
| 5 | 학교 식중독 원인조사 결과보고 | 1개월 이내 | 서식 5호 | 역학조사결과, 조치내용 등 종결보고 |
| 6 | 학교급식 실시현황(통계) ※ 반드시 NEIS 시스템 및 문서로 동시 보고 (NEIS 시스템과 문서 일치여부 확인예정) | 2014. 3.20 | NEIS 학교 급식시스템 으로 보고 (문서 동시보고) | 국립학교 포함 |
| 7 |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 | 2013.12.10 | 별도서식 | 추후 별도 통보 |

○ 보고 서식

【보건관리 분야】

[서식 1호]

학생 별도검사 추진실적(엑셀서식 보고)

기관명 : 교육청

1. 학생 소변검사 현황

| 학교 급별 | 지정 학년별 | 성별 | 검사자수 | 소 변 검 사 결 과 | | | | 비고 |
|----------|-----------|----|------|-------------|-----|--------------|-----|----|
| | | | | 단백양성 | 당양성 | 단백/당 동시양성 | 노잠혈 | |
| 초 | | 남 | | | | | | |
| | | 여 | | | | | | |
| | 계 | 남 | | | | | | |
| | | 여 | | | | | | |
| | 소계 | 남 | | | | | | |
| | | 여 | | | | | | |
| 중 | | 남 | | | | | | |
| | | 여 | | | | | | |
| | 계 | 남 | | | | | | |
| | | 여 | | | | | | |
| | 소계 | 남 | | | | | | |
| | | 여 | | | | | | |
| 고 | | 남 | | | | | | |
| | | 여 | | | | | | |
| | 계 | 남 | | | | | | |
| | | 여 | | | | | | |
| | 소계 | 남 | | | | | | |
| | | 여 | | | | | | |
| 합계 | | 남 | | | | | | |
| | | 여 | | | | | | |
| | 계 | | | | | | | |

※ 검사대상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6조(초·중·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 지정학년 학생)

2. 학생 구강검사 현황

(단위 : 원, 명)

| 학교 급별 | 학년 별 | 성 별 | 검사 자수 | 구강검사 결과 | | | | 검사비용 (해당란에 책정금액기입) | | 검사방법 (해당란에 0 표) | |
|----------|---------|--------|----------|---------|------|------|----|--------------------------|-----|-----------------------|----|
| | | | | 치아우식 | 치주질환 | 부정교합 | 기타 | 개인별 | 학급별 | 출장 | 내원 |
| 중 | | 남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소계 | 남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계 | | | | | | | | | |
| 고 | | 남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소계 | 남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계 | | | | | | | | | |
| 합계 | 남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검사대상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6조(중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 지정학년 학생)

검사비용 : 시·도교육청별 책정금액(학생별 또는 학급별 단가) 기재

검사방법 : 시·도교육청별 선택방법에 '0' 표

3. 고등학생 결핵검사 현황

| 지 정 학년 별 | 성 별 | 검사자수 | 결 핵 검 사 결 과 | | | | 비고 |
|-------------------|--------|------|-------------|-----|-----|------|----|
| | | | 경 증 | 중등증 | 중 증 | 진단보류 | |
| | 남 | | | | | | |
| | 여 | | | | | | |
| | 계 | | | | | | |
| | 남 | | | | | | |
| | 여 | | | | | | |
| | 계 | | | | | | |
| 합계 | 남 | | | | | | |
| | 여 | | | | | | |
| | 계 | | | | | | |

※ 검사대상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6조(고등학생 중 교육감 지정학년 학생)

4. 학생 시력검사 현황

| 학교 급별 | 학년 별 | 성별 | 검사자수 (A=B+ C+ D) | 시력검사 결과 | | | 비고 | |
|----------|---------|----|---------------------|---------|-------------------|-----------|----|--|
| | | | | 정상(B) | 시력이상(교정대상) (C) | 교정중인학생(D) | | |
| 초 | 2 | 남 | | | | | | |
| | | 여 | | | | | | |
| | 3 | 남 | | | | | | |
| | | 여 | | | | | | |
| | 5 | 남 | | | | | | |
| | | 여 | | | | | | |
| | 6 | 남 | | | | | | |
| | | 여 | | | | | | |
| | 소계 | 남 | | | | | | |
| | | 여 | | | | | | |
| | 중 | | 남 | | | | | |
| | | | 여 | | | | | |
| 계 | | | | | | | | |
| 소계 | | 남 | | | | | | |
| | | 여 | | | | | | |
| | | 계 | | | | | | |
| 고 | | 남 | | | | | | |
| | | 여 | | | | | | |
| | | 계 | | | | | | |
| | 소계 | 남 | | | | | | |
| | | 여 | | | | | | |
| | | 계 | | | | | | |
| 합계 | 남 | | | | | | | |
| | 여 | | | | | | | |
| | 계 | | | | | | | |

※ 검사대상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6조(전체 초·중·고등학생 중 교육감 지정학년 학생)
 시력이상(교정대상) : 어느 한 쪽이라도 나안시력이 0.7이하인 경우, 시력 교정 중인 학생 제외

[서식 2호]

흡연·음주 등 학생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적 ()반기

기관명 : 교육청

초등학생 연 2회이상, 중·고등학생 연 1회 이상 의무적 교육 실시

1. 전체학생 대상 흡연·음주 예방교육 실적

| 추진 사항 | 구분 | 전체 학교수 (A) | 교육실시 학교수 | | | 미실시 학교 (E) | 비고 |
|-------|-------|------------------|-----------|--------------|-------------------|------------------|----|
| | | | 전체학생 대상 | | 일부학생 대상 (D) | | |
| | | | 1회 (B) | 2회 이상 (C) | | | |
| 흡연 | 초 | | | | | | |
| | 중 | | | | | | |
| | 고 | | | | | | |
| | 특수/기타 | | | | | | |
| | 계 | | | | | | |
| 음주 | 초 | | | | | | |
| | 중 | | | | | | |
| | 고 | | | | | | |
| | 특수/기타 | | | | | | |
| | 계 | | | | | | |
| 기타 | 초 | | | | | | |
| | 중 | | | | | | |
| | 고 | | | | | | |
| | 특수/기타 | | | | | | |
| | 계 | | | | | | |

※ 전체학교수(A)=교육실시학교수(B+ C+ D)+ 미실시학교수(E)

※ 하반기 보고시 누계 작성, 일부학생 교육 여러 회에 걸쳐 실시하여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완료하였을 경우 전체학생 대상 교육실적에 포함

2. 교육(지원)청 주관 활동 전개실적

| 프로그램 (활동) | 실시기간 | 참여대상 | 참여인원 | 주요내용 |
|--------------|------|------|------|------|
| | | | | |

※ 작성요령 : 학교에서는 작성하지 않음

3. 교원연수 실적

| 구 분 | 주관기관 | 실시과정수(개) | 교육인원 | 주요내용 |
|-----|-------|----------|------|------|
| 반기중 | 학교자체 | | | |
| | 교육청주관 | | | |
| | 기타 | | | |
| | 계 | | | |

[서식 3호]

학생 건강한 체중관리(저체중·비만예방)* 사업추진 실적 ()반기

기관명 : 교육청

1. 건강한 체중관리* 교육 실적

| 구분 | 전체학교수 | 실시학교수 ¹⁾ | | 비 고 |
|-------|-------|---------------------|---------|-----|
| | | 전체학생 대상 | 일부학생 대상 | |
| 초 | | | | |
| 중 | | | | |
| 고 | | | | |
| 특수/기타 | | | | |
| 계 | | | | |

※ 작성요령

- 1) 실시학교수 :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 학교수(전체학교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여러 차례 교육을 통해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완료하였을 경우
 “전체학생 대상” 교육 실적에 포함

* 건강한 체중관리 : 최근 학생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 확인된 ‘저체중’ 문제인식과 관련 ‘비만’과 ‘저체중’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로 전환

2. 기타 체중관리(저체중·비만) 활동 전개실적

| 추진 사항 | 전체학교수 | 실시학교수 ¹⁾ | 실시횟수 ²⁾ | 비 고 |
|---------------------|-------|---------------------|--------------------|-----|
| 교육자료 배부(홈페이지 탑재 포함) | | | | |
| 전시회 등 각종행사 개최 | | | | |
| 건강한 체중관리 프로그램 운영 | | | | |
| 기타 예방실적 | | | | |

※ 작성요령

- 1) 실시학교수 : 1회 이상 예방활동을 실시한 학교수(전체학교수를 초과할 수 없음)
 2) 실시횟수 : 누적횟수

3. 교육(지원)청 주관 활동 전개실적

| 프로그램 (활동) | 실시기간 | 참여대상 | 참여인원 | 주요내용 |
|--------------|------|------|------|------|
| | | | | |

※ 작성요령 : 학교에서는 작성하지 않음

4. 교원연수 실적

| 구 분 | 주관기관 | 실시과정수(개) | 교육인원 | 주요내용 |
|-----|-------|----------|------|------|
| 반기중 | 학교자체 | | | |
| | 교육청주관 | | | |
| | 기타 | | | |
| | 소 계 | | | |
| 누 계 | | | | |

[서식 4호]

학교와 보건소 연계 학생건강관리사업 전개실적 ()반기

기관명 : 교육청

| 전체학교수 | | 실시학교수 ¹⁾ | | | | | |
|-------|--|---------------------|------|--------------|-----|-----|----|
| | | 구강보건 | 체중관리 | 흡연 등 약물예방 | 손씻기 | 감염병 | 기타 |
| 초 | | | | | | | |
| 중 | | | | | | | |
| 고 | | | | | | | |
| 특수 | | | | | | | |
| 계 | | | | | | | |

※ 작성요령

1) 실시학교수 : 1회 이상 사업을 실시한 학교수(전체학교수를 초과할 수 없음)

[서식 5호]

학생 건강검진 추진 현황 (OO 교육청)(엑셀서식 보고)

◎ 초1·4학년, 중·고 1학년 건강검진(신체발달상황, 구강검진 포함)

| 학교 급별 | 성별 | 학생 검진율 | | | | 학교 검진율 | | |
|-----------|----|------------|------------|----------|---------------|-------------|-------------|----------|
| | | 검진 대상인원 | 검진 완료인원 | 완료 비율 | 검진비용* (천원) | 검진대상 학교수 | 검진완료 학교수 | 완료 비율 |
| 합계 | 남 | | | | | | | |
| | 여 | | | | | | | |
| | 계 | | | | | | | |
| 초 | 남 | | | | | | | |
| | 여 | | | | | | | |
| | 계 | | | | | | | |
| 중 | 남 | | | | | | | |
| | 여 | | | | | | | |
| | 계 | | | | | | | |
| 고 | 남 | | | | | | | |
| | 여 | | | | | | | |
| | 계 | | | | | | | |
| 특수 /기타 | 남 | | | | | | | |
| | 여 | | | | | | | |
| | 계 | | | | | | | |

* 검진비용 : 전체 집행금액 기재(학생수×1인당 검진수가)

◎ 초2, 3, 5, 6학년 구강검진

| 학년 | 성별 | 학생검진율 | | | 검진비용* (천원) | 학교검진율 | | |
|----|----|------------|------------|------|---------------|-------------|-------------|----------|
| | | 검진 대상인원 | 검진 완료인원 | 완료비율 | | 검진대상 학교수 | 검진완료 학교수 | 완료 비율 |
| 총계 | 남 | | | | | | | |
| | 여 | | | | | | | |
| | 소계 | | | | | | | |
| 2 | 남 | | | | | | | |
| | 여 | | | | | | | |
| | 소계 | | | | | | | |
| 3 | 남 | | | | | | | |
| | 여 | | | | | | | |
| | 소계 | | | | | | | |
| 5 | 남 | | | | | | | |
| | 여 | | | | | | | |
| | 소계 | | | | | | | |
| 6 | 남 | | | | | | | |
| | 여 | | | | | | | |
| | 소계 | | | | | | | |

* 검진비용 : 시도교육청별 책정금액(학생별 또는 학급별) 기재

[서식 6호]

학교보건 연구(시범)학교 지정 현황(엑셀서식 보고)

| 교육 청명 | 보건교육 | | | 약물오남용예방 | | | 천식,아토피 환경성질환저감 | | | 정신건강보건 | | | 건강증진학교 | | |
|----------|---------|-------------------|----------------------|---------|-------------------|----------------------|-------------------|-------------------|----------------------|---------|-------------------|----------------------|---------|-------------------|----------------------|
| | 학교 수 | 교육청 예산 (천원) | 연구 점수 부여 여부 | 학교 수 | 교육청 예산 (천원) | 연구 점수 부여 여부 | 학교 수 | 교육청 예산 (천원) | 연구 점수 부여 여부 | 학교 수 | 교육청 예산 (천원) | 연구 점수 부여 여부 | 학교 수 | 교육청 예산 (천원) | 연구 점수 부여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기 분류 이외의 분야 추가 보고

* 작성요령 : 연구점수 부여 '1', 미부여 '0'

[서식 7호]

학교 보건실(보건교육실) 설치 현황(엑셀서식 보고)

1. 학교보건실 설치현황

| 교육 청명 | 학교 급별 | 전 체 학교수 | 보건실 설치 * | | 독립된 보건실 설치 | |
|----------|----------|------------|----------|----|------------|----|
| | | | 학교수 | 비율 | 학교수 | 비율 |
| | 초 | | | | | |
| | 중 | | | | | |
| | 고 | | | | | |
| | 특수/각종 | | | | | |
| | 계 | | | | | |

* 보건실 설치 : 기타 특별실에 설치된 보건실 포함

2. 학교보건실 설비·기구 충족현황(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 교육 청명 | 구분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특수/각종 | 계 |
|----------|---------------|------|-----|------|-------|---|
| | 전체학교수 | | | | | |
| | 기준충족 학 교 수 | | | | | |
| | 충 족 율 | | | | | |

3. 학교보건교육실 설치현황

| 교육 청명 | 학교 급별 | 전 체 학교수 | 보건교육실 설치 * | | 독립된 보건교육실 설치 | |
|----------|----------|------------|------------|----|--------------|----|
| | | | 학교수 | 비율 | 학교수 | 비율 |
| | 초 | | | | | |
| | 중 | | | | | |
| | 고 | | | | | |
| | 특수/각종 | | | | | |
| | 계 | | | | | |

* 보건교육실 : 보건실과 공용으로 설치된 보건교육실 포함

* 전체 학교수는 당해 연도 교육통계연보 기준

[서식 8호]

학교건강검사 결과 처리 현황(엑셀서식 보고)

1. 학교건강검사(신체발달상황, 건강검진, 건강조사) 결과 통계처리 현황

| 교육 청명 | 항 목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특수학교 | | 계 | |
|----------|--------|----------|------------|----------|------------|----------|------------|----------|------------|----------|------------|
| | | 총 학교수 | 처리한 학교수 |
| | 신체발달상황 | | | | | | | | | | |
| | 건강검진 | | | | | | | | | | |
| | 건강조사 | | | | | | | | | | |

2. 학교건강검사 결과 반영 학생건강증진계획 수립·추진 현황

| 교육 청명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특수학교 | | 계 | |
|----------|----------|-------------|----------|-------------|----------|-------------|----------|-------------|----------|-------------|
| | 총 학교수 | 계획수립 학교수 |
| | | | | | | | | | | |

3. 학생 건강검진 관련 만족도 조사 및 결과 조치 현황

| 교육 청명 | 초등학교 | | | 중학교 | | | 고등학교 | | | 특수학교 | | | 계 | | |
|----------|--------------|---------------|-----------------|--------------|---------------|-----------------|--------------|---------------|-----------------|--------------|---------------|-----------------|--------------|---------------|-----------------|
| | 총 학교 수 | 조사 학교 수 | 결과 조치 학교수 |
| | | | | | | | | | | | | | | | |

* 조사 학교수 : 학생건강검진 관련(검진방법 및 검진기관) 학부모(학생) 대상 만족도조사 학교수

* 결과조치 학교수 : 만족도 조사 결과 공문으로 검진기관에 개선(시정)요청 및 개선(반영) 학교수

4. 시도교육청 주관, 학생건강증진 사업 추진 현황

| 교육 청명 | 구 분 | 환경성 질환저감 | 건강한 체중관리 | 정신건강 | 구강보건 | 약물오남 용예방 | 시력관리 | 기타 (사업명기재) |
|-----------|-----|-------------|-------------|------|------|-------------|------|---------------|
| | | 소요예산(천원) | | | | | | |
| 사업 범위* | 학교수 | | | | | | | |
| | 학생수 | | | | | | | |

* 사업범위 : 참여 학교수 및 학생수 (사업별 중복 기재 가능)

* 건강한 체중관리 : 저체중 및 비만예방 관리

[서식 9호]

학교 보건교육 실시 현황(엑셀서식 보고)

1. 학교보건교육 실시 계획 및 실적

| 교육 청명 | 학교 급별 | 학교수 | 평균 수업 시수(학년단위 학급 당 연평균 시수) | | | | | |
|----------|----------|-----|----------------------------|-----|-----|-----|-----|-----|
| | |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5학년 | 6학년 |
| | 초 | | | | | | | |
| | 중 | | | | | | | |
| | 고 | | | | | | | |

* 보건교육 시수 : 교사의 수업시수가 아닌, 학급 기준 교과시간 또는 창의적 재량활동(체험활동)시간 이용, 연평균 보건수업시수

2. '보건' 과목 선택현황

| 교육 청명 | 중학교 | | 고등학교 | | | | | | | | 계 | | |
|----------|----------|-----------|----------|-----------|----------|-----------|----------|-----------|----------|-----------|----------|-----------|--|
| | | | 일반고 | | 특성화고 | | 자율고 | | 특수목적고 | | | | |
| | 총 학교수 | 선택 학교수 | |
| | | | | | | | | | | | | | |

* 창재(체)시간 이외의 선택(교양) 과목 운영학교

【환경관리 분야】

[서식 1호]

학교 교사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실적

(반기 / 서면, NEIS 병행)

기관명 : 교육청

1. 정기점검 실적

가. 점검실적

| 구 분 | | 초등학교 | 중 학 교 | 고등학교 | 기타학교 | 계 |
|------------|-------|------|-------|------|------|---|
| 전체 학교수 | | | | | | |
| 점 검 학교수 | 실내환경 | | | | | |
| | 공 기 질 | | | | | |
| | 일반환경 | | | | | |

※ 작성요령 : “실내환경”은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표(교육부 고시 제2006-10호) 제2호의 ‘실내환경 측정결과’이고, “공기질”은 제3호의 ‘공기질 등 측정결과’이며, “일반환경”은 제4호의 ‘일반환경 및 식품위생 점검’을 말함

나. 공기질 측정실적(학교수)

| 구 분 | | 초등학교 | 중 학 교 | 고등학교 | 기타학교 | 계 |
|--------------------|-------|------|-------|------|------|---|
| 점 검 기 관 (일반) | 학교자체 | | | | | |
| | 교 육 청 | | | | | |
| | 외부기관 | | | | | |
| | 계 | | | | | |

※ 작성요령 : “점검기관”은 공기질 중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점검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측정을 주도적으로 실시한 학교수를 말함

다. 공기질 측정결과(학교수)

| 구 분 | 초등학교 | | 중 학 교 | | 고등학교 | | 기타학교 | | 계 | |
|-----------------------------------|------|----|-------|----|------|----|------|----|----|----|
| | 적합 | 초과 | 적합 | 초과 | 적합 | 초과 | 적합 | 초과 | 적합 | 초과 |
| PM10 ($\mu\text{g}/\text{m}^3$) | | | | | | | | | | |
| CO ₂ (ppm) | | | | | | | | | | |
| HCHO ($\mu\text{g}/\text{m}^3$) | | | | | | | | | | |
| 총부유세균(CFU/ m^3) | | | | | | | | | | |
| 낙하세균 (CFU/실) | | | | | | | | | | |
| CO (ppm) | | | | | | | | | | |
| NO ₂ (ppm) | | | | | | | | | | |
| Rn (Bq/ m^3) | | | | | | | | | | |
| TVOC ($\mu\text{g}/\text{m}^3$) | | | | | | | | | | |
| 석 먼 (개/cc) | | | | | | | | | | |
| 오 존 (ppm) | | | | | | | | | | |
| 진드기 (마리/ m^2) | | | | | | | | | | |

※ 작성요령 : 최종결과를 중심으로 작성

2. 특별점검 실적

| 구 분 | | 초등학교 | 중 학교 | 고등학교 | 기타학교 | 계 |
|---------|--------|------|------|------|------|---|
| 신축3년 이내 | 대상 학교수 | | | | | |
| | 점검 학교수 | | | | | |
| 증·개축 | 대상 학교수 | | | | | |
| | 점검 학교수 | | | | | |
| 기 타 | 대상 학교수 | | | | | |
| | 점검 학교수 | | | | | |

※ 작성요령 : 특별점검 사유별로 점검을 실시한 학교수를 기재하고 ‘기타’의 경우 사유 명시

3. 신축학교 점검 실적

가. 점검실적

| 구 분 | | 초등학교 | 중 학교 | 고등학교 | 기타학교 | 계 |
|--------|-------|------|------|------|------|---|
| 대상 학교수 | | | | | | |
| 점검 학교수 | 3월 개교 | | | | | |
| | 9월 개교 | | | | | |
| | 계 | | | | | |

나. 공기질 측정결과(학교수)

| 구 분 | 초등학교 | | 중 학교 | | 고등학교 | | 기타학교 | | 계 | |
|-----------------------------------|------|----|------|----|------|----|------|----|----|----|
| | 적합 | 초과 | 적합 | 초과 | 적합 | 초과 | 적합 | 초과 | 적합 | 초과 |
| HCHO ($\mu\text{g}/\text{m}^3$) | | | | | | | | | | |
| TVOC ($\mu\text{g}/\text{m}^3$) | | | | | | | | | | |
| 벤젠 ($\mu\text{g}/\text{m}^3$) | | | | | | | | | | |
| 톨루엔 ($\mu\text{g}/\text{m}^3$) | | | | | | | | | | |
| 에틸벤젠 ($\mu\text{g}/\text{m}^3$) | | | | | | | | | | |
| 자일렌 ($\mu\text{g}/\text{m}^3$) | | | | | | | | | | |
| 스티렌 ($\mu\text{g}/\text{m}^3$) | | | | | | | | | | |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신축공동주택 권고기준 초과여부 기재

[서식 2호]

학교 먹는물 관리실적(0분기)

(분기 / 서면, NEIS 병행)

1. 학교 먹는물 공급실태

| 구 분 | | 초등학교 | 중 학 교 | 고등학교 | 각종특수 | 계 |
|------------|-------------|------|-------|------|------|---|
| 전체학교수 | | | | | | |
| 시설별 학교수 | 상수도(A) | | | | | |
| | 지하수(B) | | | | | |
| | 상수도+ 지하수(C) | | | | | |
| | 외부공급 | | | | | |
| | 계(D) | | | | | |

*분교장도 학교수에 포함(이하 동일)

2. 학교내 저수조(물탱크) 이용현황

| 구 분 | | 초등학교 | 중 학 교 | 고등학교 | 각종특수 | 계 |
|--------------------------|-----------|------|-------|------|------|---|
| 상수도 이용교 | 대상학교수(A) | | | | | |
| | 설치학교수 | | | | | |
| | 설치저수조수 | | | | | |
| | 먹는물이용저수조수 | | | | | |
| 지하수 이용교 | 대상학교수(B) | | | | | |
| | 설치학교수 | | | | | |
| | 설치저수조수 | | | | | |
| | 먹는물이용저수조수 | | | | | |
| 상수도 지하수 공 동 이용교 | 대상학교수(C) | | | | | |
| | 설치학교수 | | | | | |
| | 설치저수조수 | | | | | |
| | 먹는물이용저수조수 | | | | | |
| 계 | 대상학교수(D) | | | | | |
| | 설치학교수 | | | | | |
| | 설치저수조수 | | | | | |
| | 먹는물이용저수조수 | | | | | |

3. 정수기 설치현황

| 구 분 | | 초등학교 | 중 학 교 | 고등학교 | 각종특수 | 계 |
|-----------------------|-------|------|-------|------|------|---|
| 전체학교수 | | | | | | |
| 정수기(냉온수기)설치교 | | | | | | |
| 설치이용 정수기수 (정수기) | 상수도연결 | | | | | |
| | 지하수연결 | | | | | |
| | 계 | | | | | |
| 설치이용 | 상수도연결 | | | | | |

| | | | | | | |
|----------------|-------|--|--|--|--|--|
| 정수기수 (냉온수기) | 지하수연결 | | | | | |
| | 먹는샘물 | | | | | |
| | 계 | | | | | |

4. 정수기 수질검사 결과(정기)

| 구 분 | | 초등학교 | 중 학 교 | 고등학교 | 각종특수 | 계 |
|-------|---------------------|------|-------|------|------|---|
| ()분기 | 대상 학교수(A) | | | | | |
| | 검사 학교수 (B=C+D+E) | | | | | |
| | 1차 적합판정수(C) | | | | | |
| | 최종 적합판정수(D) | | | | | |
| | 부적합판정수(E) | | | | | |

5.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 구 분 | | 초등학교 | 중 학 교 | 고등학교 | 각종특수 | 계 |
|----------------|---------------------|------|-------|------|------|---|
| 분기 or 정기 | 대상 학교수(A) | | | | | |
| | 검사 학교수 (B=C+D+E) | | | | | |
| | 1차 적합판정수(C) | | | | | |
| | 최종 적합판정수(D) | | | | | |
| | 부적합판정수(E) | | | | | |

※ [참고] 정수기 특별점검결과(분기)

| 구분 | | 초 | 중 | 고 | 기타 | 합계 | |
|-----------|-----------|-----------------|---|---|----|----|--|
| () 분기 | 전체학교 | | | | | | |
| | 정수기 설치학교 | | | | | | |
| | 정수기설치대수 | | | | | | |
| | 특별점검 학교 | | | | | | |
| | 특별점검 정수기수 | | | | | | |
| | 후속조치 | 정수기 폐기조치 | | | | | |
| | | 수질검사시기 조정 조치 | | | | | |
| | | 채수구 등 청소상태 시정조치 | | | | | |
| | | 설치장소 시정조치 | | | | | |
| 기타 | | | | | | | |

[서식 3호]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 추진현황

(반기 / 서면, NEIS 병행)

기관명 : 교육청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순회점검 실시

| 구 분 | | 실시대상 학 교 수 | 점검실시 학 교 수 | 참 여 인 원 | 활동 내용(건수) | | | |
|-----|---------------|---------------|---------------|------------|----------------|--------------|--------------|---|
| | | | | | 유해업소 신고(통보) | 불량광고 벽보제거 | 업소계도 전단배포 | 계 |
| 분기 | 정화구역 관 리 자 | | | | | | | |
| | 정화구역 설 정 자 | | | | | | | |
| | 계 | X | | | | | | |
| 누 계 | | X | | | | | | |

※ 작성요령

- 관련근거 :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4조 관련
- 실시대상 : 정화구역이 설정된 모든 학교
- 실시회수 : 교육감이 정한 회수 또는 교육장, 학교장이 필요한 경우
- 활동내용 : 교육환경 저해행위 또는 유해업소 무단설치 실태파악, 관할 교육청에 통보 및 금지행위 단속요청(시·군·구청 및 경찰에 신고) 등

2. 단속대상 정보자료 수집통보

| 구 분 | | 통보건수 | 위반사례 통보처 | | | |
|-----|------|------|----------|-----|--------------|--------|
| | | | 교육청 | 검찰청 | 경찰서 (과출소) | 시·군·구청 |
| 분기 | 서면통보 | | | | | |
| | 유선통보 | | | | | |
| | 계 | | | | | |
| 누 계 | | | | | | |

3.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실적

| 구 분 | 심의건수 | 해제 | | 금지 | | 전체정화위원 현장방문건수 |
|-----|------|-----|-------|-----|-------|------------------|
| | | 건 수 | 비율(%) | 건 수 | 비율(%) | |
| 분 기 | | | | | | |
| 누 계 | | | | | | |

4. 학교주변 유해환경 지도단속

4-1. 참여인원

| 구 분 | 행정공무원 | 경 찰 | 교육청/교직원 | 학부모/기타 | 계 |
|-----|-------|-----|---------|--------|---|
| 분 기 | | | | | |
| 누 계 | | | | | |

4-2. 적발내용

| 구 분 | 퇴폐·변태 | 무허가영업 | 미성년자출입목인 | 준수사항 위반등 | 계 |
|-----|-------|-------|----------|----------|---|
| 분 기 | | | | | |
| 누 계 | | | | | |

4-3. 위반업종별 현황

| 구 분 | 유흥주점 단란주점 | 일 반 음식점 | 게임관련 시 설 등 | 노 래 연습장 | 만화가게 | 비디오물 관련시설 | 기타업소 | 계 |
|-----|--------------|------------|---------------|------------|------|--------------|------|---|
| 분 기 | | | | | | | | |
| 누 계 | | | | | | | | |

4-4. 위반업소 조치현황

| 구 분 | 고 발 | 영업정지 | 허가취소 | 경고/시정 | 기타 | 계 |
|-----|-----|------|------|-------|----|---|
| 분 기 | | | | | | |
| 누 계 | | | | | | |

※ 교육청 또는 학교 교직원 등의 참여하에 실시한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적을 보고대상으로 하고, 교육청(학교)의 참여 없이 타기관의 실적은 보고에서 제외

4-5. 퇴폐·음란물 압수/폐기 실적

| 구 분 | 게임관련시설 | | 만화가게 | | 비디오물관련시설 | | 문구점/기타 | | 계 | |
|-----|--------|----|------|----|----------|----|--------|----|-----|----|
| | 업소수 | 점수 | 업소수 | 점수 | 업소수 | 점수 | 업소수 | 점수 | 업소수 | 점수 |
| 분 기 | | | | | | | | | | |
| 누 계 | | | | | | | | | | |

※ 4-2, 4-3, 4-4, 4-5의 계는 동일하여야 함.

5. 이전·폐쇄대상업소 현황 및 정비실적

5-1. 학교보건법상 정비대상 업소현황

| 구 분 | | 유치원 |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특수학교 | | 대학(교) | | 계 | | |
|----------------|----------------|-----|----|------|----|-----|----|------|----|------|----|-------|----|---|--|--|
| | | 절대 | 상대 | 절대 | 상대 | 절대 | 상대 | 절대 | 상대 | 절대 | 상대 | 절대 | 상대 | 계 | | |
| 1 | 제한영화상영관 | | | | | | | | | | | | | | | |
| 2 | 압축고압가스제조 및 저장소 | | | | | | | | | | | | | | | |
| 3 | 도축·화장·납골시설 | | | | | | | | | | | | | | | |
| 4 | 폐기물 수집장 | | | | | | | | | | | | | | | |
| 5 | 유형·단란주점 | | | | | | | | | | | | | | | |
| 6 | 호 텔 | | | | | | | | | | | | | | | |
| 7 | 여 관 | | | | | | | | | | | | | | | |
| 8 | 여인숙 | | | | | | | | | | | | | | | |
| 9 | 당구장 | | | | | | | | | | | | | | | |
| 10 | 전용게임장 | | | | | | | | | | | | | | | |
| 11 | 만화가게 | | | | | | | | | | | | | | | |
| 소계('95년말까지) | | | | | | | | | | | | | | | | |
| 12 | 무도학원/무도장 | | | | | | | | | | | | | | | |
| 13 | 노래연습장 | | | | | | | | | | | | | | | |
| 14 | 담배자판기 | | | | | | | | | | | | | | | |
| 소계('98년말까지) | | | | | | | | | | | | | | | | |
| 15 | 전화방 | | | | | | | | | | | | | | | |
| 16 | 성기구취급업소 | | | | | | | | | | | | | | | |
| 소계(즉시) | | | | | | | | | | | | | | | | |
| 17 | 비디오물감상실 | | | | | | | | | | | | | | | |
| 소계('02년말까지) | | | | | | | | | | | | | | | | |
| 18 | 멀티게임장(PC) | | | | | | | | | | | | | | | |
| 소계('04년말까지) | | | | | | | | | | | | | | | | |
| 19 | 경륜·경정장 | | | | | | | | | | | | | | | |
| 소계('09년말까지) | | | | | | | | | | | | | | | | |
| 20 | 미니게임기 | | | | | | | | | | | | | | | |
| 소계('08.8.4까지) | | | | | | | | | | | | | | | | |
| 21 | 신변중 업소 | | | | | | | | | | | | | | | |
| 소계('11.7.20까지)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현재 미정비 잔여업소에 대하여 작성(무단설치업소 제외)

5-2. 이전·폐쇄 대상업소 정화요청 및 고발현황

| 구 분 | 정화요청/고발 | | 이전·폐쇄 조치 건수 및 내용 | | | | | 계 |
|-----|----------|------|------------------|------|------|-----------|----------------|---|
| | 정화요청 건 수 | 고발건수 | 자진폐업 | 업종전환 | 위치이전 | 강제폐쇄 허가취소 | 학교이전/폐교 정화구역조정 | |
| 분 기 | | | | | | | | |
| 누 계 | | | | | | | | |

※ 정화요청 및 고발업소는 학교보건법상 이전·폐쇄 대상업소에 대하여 누가기록

5-3. 고발업소 명단

| 연번 | 고발일자 | 고발자 (기관명) | 고발처 | 고발내용 | | |
|----|------|-----------|-----|------|-----|------|
| | | | | 업소명 | 업주명 | 위반내용 |
| | | | | | | |
| | | | | | | |

5-4. 정비된 업소현황(연간누계)

| 정비기한별 | 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업소소재지 | 관리학교명 | 정비일자 | 조치내용 |
|------------|-----|-----|-----|-------|-------|------|------|
| 1995.12.31 | | | | | | | |
| 1998.12.31 | | | | | | | |
| 즉시정비 | | | | | | | |
| 2002.12.31 | | | | | | | |
| 2004.12.31 | | | | | | | |
| 2009.12.31 | | | | | | | |
| 2008. 8. 4 | | | | | | | |

※ 작성요령

- 정비된 업소현황은, 위 5-2번 통계의 이전·폐쇄 조치내용의 업소수와 같아야 함

- ☞ 모든 지정된 보고서식은 임의로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말 것
- 서식안의 내용은 한글 신명조체 12포인트로 작성요망
- 특히, 통계수치는 정확히 작성하여 집계 시 오류가 발생치 않도록 유념
- 지정된 보고기일 내에 우리부에 도착될 수 있도록 기일 엄수

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무단설치 업소 현황 및 정비실적

6-1. 무단 설치 업소현황

| 구 분 | 유치원 |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특수학교 | | 대학(교) | | 계 | | | |
|-----|-----------------|----|------|----|-----|----|------|----|------|----|-------|----|----|----|---|--|
| | 절대 | 상대 | 절대 | 상대 | 절대 | 상대 | 절대 | 상대 | 절대 | 상대 | 절대 | 상대 | 절대 | 상대 | 계 | |
| 1 | 환경기준초과 | | | | | | | | | | | | | | | |
| 2 | 제한영화상영관 | | | | | | | | | | | | | | | |
| 3 | 압축·고압가스제조 및 저장소 | | | | | | | | | | | | | | | |
| 4 | 도축·화장·납골시설 | | | | | | | | | | | | | | | |
| 5 | 폐기물 수집장 | | | | | | | | | | | | | | | |
| 6 | 폐기물처리시설 | | | | | | | | | | | | | | | |
| 7 | 가축사체처리장 | | | | | | | | | | | | | | | |
| 8 | 전염병원등 | | | | | | | | | | | | | | | |
| 9 | 가축시장 | | | | | | | | | | | | | | | |
| 10 | 유흥·단란주점 | | | | | | | | | | | | | | | |
| 11 | 호텔, 여관 등 | | | | | | | | | | | | | | | |
| 12 | 당구장 | | | | | | | | | | | | | | | |
| 13 | 경륜장 등 | | | | | | | | | | | | | | | |
| 14 | 게임제공업 | | | | | | | | | | | | | | | |
| 15 | 인터넷컴퓨터 | | | | | | | | | | | | | | | |
| 16 | 증기탕 | | | | | | | | | | | | | | | |
| 17 | 만화가게 | | | | | | | | | | | | | | | |
| 18 | 무도학원 등 | | | | | | | | | | | | | | | |
| 19 | 노래연습장 | | | | | | | | | | | | | | | |
| 20 | 담배자판기 | | | | | | | | | | | | | | | |
| 21 | 비디오감상실 | | | | | | | | | | | | | | | |
| 22 | 성기구취급업소 | | | | | | | | | | | | | | | |
| 23 | 전화방, 화상방 | | | | | | | | | | | | | | | |
| 24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 | | | | | | | | | | | | | |
| 25 | 미니게임기 | | | | | | | | | | | | | | | |
| 26 | 신변종업소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학교보건법상 이전·폐쇄대상업소 제외

6-2. 무단 설치업소 정화요청 및 고발현황

| 구 분 | 정화요청/고발 | | 이전·폐쇄 조치 건수 및 내용 | | | | | 계 |
|-----|----------|------|------------------|------|------|-----------|----------------|---|
| | 정화요청 건 수 | 고발건수 | 자진폐업 | 업종전환 | 위치이전 | 강제폐쇄 허가취소 | 학교이전/폐교 정화구역조정 | |
| 분 기 | | | | | | | | |
| 누 계 | | | | | | | | |

※ 정화요청 및 고발업소 누가기록

[서식 4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각종업소 현황

(서면, NEIS 보고. 6.30기준)

기관명 : 교육청

| 구분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특수학교 | 대학(교) | 계 |
|-----|-----------------|------|-----|------|------|-------|---|
| 1 | 환경기준초과 | | | | | | |
| 2 | 제한영화상영관 | | | | | | |
| 3 | 압축·고압가스제조 및 저장소 | | | | | | |
| 4 | 도축·화장·납골시설 | | | | | | |
| 5 | 폐기물 수집장 | | | | | | |
| 6 | 폐기물처리시설 | | | | | | |
| 7 | 가축사체처리장 | | | | | | |
| 8 | 전염병원등 | | | | | | |
| 9 | 가축시장 | | | | | | |
| 10 | 유흥·단란주점 | | | | | | |
| 11 | 호텔, 여관 등 | | | | | | |
| 12 | 당구장 | | | | | | |
| 13 | 경륜장 등 | | | | | | |
| 14 | 게임제공업 | | | | | | |
| 15 | 인터넷컴퓨터 | | | | | | |
| 16 | 증기탕 | | | | | | |
| 17 | 만화가게 | | | | | | |
| 18 | 무도학원 등 | | | | | | |
| 19 | 노래연습장 | | | | | | |
| 20 | 담배자판기 | | | | | | |
| 21 | 비디오감상실 | | | | | | |
| 22 | 성기구취급업소 | | | | | | |
| 23 | 전화방, 화상방 | | | | | | |
| 24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 | | | | |
| 25 | 미니게임기 | | | | | | |
| 26 | 신변종업소 | | | | | | |
| 합 계 | | | | | | | |

※ 작성요령

- 유치원과 대학(교)의 경우 학교보건법상 금지행위 및 시설대상만 작성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학교보건법상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전체업소를 대상으로 작성하되, 이전·폐쇄대상 유해업소를 포함할 것

[서식 5호]

2012년도 학교환경위생정화 관련 소송현황

| 일련 번호 | 선고일자 및 사건번호 | 판 시 사 항 | 비고 |
|----------|----------------|---------|----|
| | | | |

○○법원 년 월 일 선고 (사건번호) 판결 <휴먼고덕 12>

【판시사항】 <휴먼명조 10 진하게>

- [1] <휴먼명조 10>
- [2]

【판결요지】

- [1]

【참조조문】

- [1]

【참조판례】

- [1]

【항소(상고)포기사유】

- [1]

<작성요령>

- 작성대상 : 사건별로 최종심부터 최초심(지방법원) 판결문까지 작성
 - 동일사건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행정)법원 순으로 모두작성
 - 지방(행정)법원 판결 또는 고등법원에서 종결된 사건 중 교육청이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한 경우에는 항소(상고)포기 사유 요약 및 공문사본 첨부
- 사건별 별지로 작성 후 1부 출력 후 판결문 사본 첨부(화일 별도송부)
- B5용지(여백 : 좌우 20, 상하 15, 머리말, 꼬리말 10, 문단 : 좌우 상하 0)
 - 양식 및 글자크기, 형태 임의변경 금지

※ [대법원에서 발행한 판례집]이나,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 home > 사법정보광장 > 종합법률정보)에서 판례를 검색 후 참고하여 작성바랍니다.

【급식관리 분야】

[서식 1호]

2013년도 학교급식비 지원계획 및 실적보고

기관명 : 교육청

- * '13년 현재기준, 농어촌지역은 읍면지역 소재학교의 초·중·고교 학생수
- * 저소득층은 최저생계비 130%이하(전국평균 학생수의 13.53%), 나머지는 일반학생에 포함
- * 지원예산은 교육청, 지자체, 기타(성금 등)로 구분 기재
- * 국립학교도 수합·일괄보고(국립학교장은 3월 31일까지 관할 교육청에 통보할 것)

1. 농어촌지역 학교급식비 지원계획 및 실적

| 구분 | | 학생수(명) | | | 지원액(재원부담, 백만원) | | | |
|-----------------------|---|--------|----|----|----------------|-----|----|---|
| | | 대상 | 지원 | 비율 | 교육청 | 지자체 | 기타 | 계 |
| 농 어 촌 지 역 | 초 | 저소득층 | | % | | | | |
| | | 일반학생 | | % | | | | |
| | | 계 | | % | | | | |
| | 중 | 저소득층 | | % | | | | |
| | | 일반학생 | | % | | | | |
| | | 계 | | % | | | | |
| | 고 | 저소득층 | | % | | | | |
| | | 일반학생 | | % | | | | |
| | | 계 | | % | | | | |
| | 계 | 저소득층 | | % | | | | |
| | | 일반학생 | | % | | | | |
| | | 계 | | % | | | | |

2. 도시지역 학교급식비 지원계획 및 실적

| 구분 | | | 학생수(명) | | | 지원액(재원부담, 백만원) | | | |
|------|---|------|--------|----|----|----------------|-----|----|---|
| | | | 대상 | 지원 | 비율 | 교육청 | 지자체 | 기타 | 계 |
| 도시지역 | 초 | 저소득층 | | | % | | | | |
| | | 일반학생 | | | % | | | | |
| | | 계 | | | % | | | | |
| | 중 | 저소득층 | | | % | | | | |
| | | 일반학생 | | | % | | | | |
| | | 계 | | | % | | | | |
| | 고 | 저소득층 | | | % | | | | |
| | | 일반학생 | | | % | | | | |
| | | 계 | | | % | | | | |
| | 계 | 저소득층 | | | % | | | | |
| | | 일반학생 | | | % | | | | |
| | | 계 | | | % | | | | |

※ 보고시기 : 계획 2013. 4. 5까지, 실적 2014. 2.28까지

[서식 2호]

자치단체의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계획 및 실적보고

기관명 : 교육청

| 지원 학교수 | | | | 지원예산(백만원) | | | | 지원방법 및 학교수 | | |
|--------|-----|------|---|-----------|-----|------|---|------------|----|---------------|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계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계 | 현물 | 현금 | 현물 및 현금 |
| | | | | | | | | | | |

※ 보고시기 : 계획 2013. 4. 5까지, 실적 2014. 2.28까지

[서식 3호]

학교급식 위생관리대책 추진상황 보고

(2013년 상·하반기)

기관명 : 교육청

1. 급식시설 개선 예산지원 현황

| 구 분 |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특수학교 | 계 |
|--------------------|-----|------|-----|------|------|---|
| 개 선 학교수 | 반기중 | | | | | |
| | 누 계 | | | | | |
| 예 산 지원액 (천원) | 반기중 | | | | | |
| | 누 계 | | | | | |

2. 위생·안전점검 실적

| 구 분 | | 점검학교수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
| 직영 | 학교수 | | | | | | |
| | 비율(%) | 100 | | | | | |
| 위탁 | 학교수 | | | | | | |
| | 비율(%) | 100 | | | | | |

3. 학교급식 위생교육·연수실적

| 구 분 | | 교직원 | 조리종사원 | 영양사 | 급식업자 | 학부모기타 | 계 |
|------------|-----|-----|-------|-----|------|-------|---|
| 교 육 연 인 | 반기중 | | | | | | |
| | 누 계 | | | | | | |

4. 학부모 식재료 검수 등 모니터링 참여현황

| 구 분 |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특수학교 | 계 |
|------------|-----|------|-----|------|------|---|
| 참 여 학교수 | | | | | | |
| 참 여 인원수 | 반기중 | | | | | |
| | 누 계 | | | | | |

※ 보고시기 : 상반기 2013. 7.31까지, 하반기 2014. 1. 4까지

[서식 4호]

학교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보고

('13.03.13. ○○○○교육청)

<예시>

▶ ○○도 ○○시 △△고등학교(공립, 직영)에서 복통과 설사증세를 보이는 식중독 의심환자 ○○명 발생 ⇒ ▽▽보건소에서 역학조사 중

※ 보고자 : 직/성명(전화번호)

1. 발생현황

- 학 교 명 : △△고등학교(공립, 직영급식, ☎000-123-0000)
- 발생현황 : 급식학생 500명 중 10명(2.0%)
 - 주요증세 : 복통 및 설사
 - 인지/신고일시 : 3.13(화) 09:00경/ 3.13(화) 10:00경 △△보건소
 - 치료조치 : 입원 0명, 통원치료 13명, 투약·자가치료 7명

2. 조치상황

- △△고등학교
 - 학교장 주재 긴급대책 회의(△월 △일 00:00)
 - 학생 보건교육 실시, 급식중단(△/△일 ~), 도시락 지참지도
- △△보건소 / △△교육청
 - 역학조사 수행 : 환자가검물 명, 환경가검물 건 채취
 -

※ 참고사항

- 추정원인 :
 - 식수종류 :
 - 언론취재 :
 - 향후대책 :
- ※ 보고시기 : 식중독 의심환자 환자발생 인지즉시(교육청 보고, 보건소 신고)

[서식 5호]

< 예시 >

학교 식중독 원인조사 결과보고

기관명 : ○○○○교육청

1. 발생개요

- 학교명, 설립별, 급식형태, 소재지 등
- 주요증세, 일자별 발병 및 치료현황 등
- 학교의 인지시기, 교육청 보고 및 보건소 신고일시

2. 급식실시 현황

- 급식인원(학생, 교직원), 종사원수, 급식시간, 식단내용
- 식재료납품업체 및 위생관리 현황 등

3. 주요 조치내용

- 일자별, 기관별 주요조치 내용
 - 안전공제회 등의 보상내용, 관련업체 조치 및 관련자 문책 등 포함

4. 식중독 원인조사 결과

- 식단작성, 식재료검수, 종사자건강 및 위생상태, 조리작업과정 등 조사결과
- 역학조사 설문조사, 보존식 및 환자가검물, 환경가검물 검사결과 등
- 보건소(역학조사관)의 종합결론

5. 시사점 및 향후계획

- 식중독 사고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시사점
- 식중독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및 향후계획

※ 보고시기 : 학교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종결보고)



참고자료



【참고자료 1】

고발요령 및 절차

- 담당 공무원은 학교보건법 위반 업소를 인지하면,
 - ① 고발의뢰서
 - ② 고발장
 - ③ 담당 공무원 진술서
 - ④ 입증서류(채증사진, 행정공문서 등)을 구비해서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고발을 접수(우편 접수가능)
- 관할 경찰서는 고발 의뢰서를 토대로 사실 확인 후 검찰청에 송치

[예시1]

고 발 장

1. 피고발인 인적사항
2. 영업장소
3. 고발사유 및 내용
4. 관계법규
5. 첨부서류

2013. . .

○ ○ 교 육 청 교 육 장

○○경찰서장 귀하

[예시2]

진 술 서

◦ 소 속 :

◦ 직 명 :

◦ 성 명 :

- 업 소 명 :

- 업 종 :

- 업 주 명 :

- 주민등록번호 :

- 영업장소 :

2013. . .

위 진술인

(인)

○경찰서장 귀하

【참고자료 2】

【학교 내 결핵관리 지침 요약】

< 학교 >

1) 다음의 경우 환자명부를 작성하고,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별첨서식 참고>

- 가)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른 검진 결과, 결핵 환자나 결핵 의심자로 통보 받을 때
- 나) 결핵으로 진단받거나 또는 치료중인 학생을 발견 했을 때

2) 보건소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환자를 환자 명부에 기록한다.<별첨서식 준수>

3) 위 1)의 “가), 나)”항의 학생과, 2주 이상의 심한 기침을 하거나 가래가 있는 등 결핵의심사례 발견시 의심자 및 보호자에게 보건소로 방문토록 지도한다.

4) 결핵치료·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한다.

- 가) 결핵환자에 대해 수시로 상담 및 교육 실시(복약확인 등)
- 나) 전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결핵 감염 후 발병위험, 결핵 전과, 결핵을 의심할 증상 등에 대한 교육 실시(보건소장 또는 시·도지사의 협조), 가정통신문 발송 등
- 다) 학부모에게 결핵 가정통신문 발송

5) 보건소장으로부터 환자의 접촉자에 대한 검진 및 그에 따른 조치를 위한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도록 하도록 한다.

6) 보건소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환자를 환자 명부에 기록·관리하고, 치료 완료된 명단 통보시 환자 관리를 종료 처리한다.

※ 학생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 보건소가 상이한 경우에는 학교소재지 보건소가 행정관리를 총괄

< 보건소 >

1) 보건소장은 교직원과 학생이 등록 및 퇴록시 치료상황 및 결과를 해당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가) 보건소 및 병·의원 등에서 파악된 학생 및 교직원 환자 정보
- 나) 보건소에서 관리되고 있는 학생 및 교직원 환자의 퇴록시 퇴록결과

2) 보건소장은 학교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즉시 결핵환자 및 결핵 의심자, 보호자에게 보건소를 방문토록 연락한다.

3) 보건소 방문자 관리(결핵환자, 결핵의심/유소견자)

가) 결핵환자(접촉자 검진 결과 발견된 환자 포함)

- 의무기록 조사 : 결핵 환자 의무기록조사서
- 면접조사 : 결핵 환자 면접 조사서
- 치료 상황 파악 : 치료중인 경우 현재 치료기관에서 계속 치료하도록 하고 미치료 또는 치료중단자인 경우 보건소 등록치료

나) 결핵의심/유소견자

- 흉부 X-선 직접촬영을 실시하고, 객담검체 23개를 수집하여 도말검사를 실시하며, 2검체 모두 대한결핵협회 지부에 배양검사 의뢰
- 배양검사 의뢰시 신속감수성 검사 및 결핵균 DNA 검사도 같이 의뢰

4) 미방문자 조치 : 방문예정일까지 방문하지 않는 경우는 학교장에게 유선으로 협조 요청

5) 접촉자 조사

- * 접촉자 : 전염성 기간 동안 환자와 접촉한 자
(밀접접촉자 : 전염성환자와 함께 거주하거나 매일 접촉하는 친구, 교직원, 학급생, 동거가족 등)

가) 접촉자 조사 범위

| 발생 상황 | 접촉자 범위 | 검진 |
|---|------------------------|--------------------------------|
| ① 동일 학급(반)에서 도말음성 환자 1명(폐외결핵 포함) | 친한 친구 또는 결핵 유증상자 | TST ¹⁾ 흉부 X-선 검사 |
| | 흉부 X-선 검사상 유소견자 및 유증상자 | 객담검사(도말 및 배양) |
| ② 동일 학급(반)에서 도말양성 환자 1명 또는 6개월 이내 활동성 환자 2명 이상 | 해당 학급(반)생 (교직원 포함) | TST ¹⁾ 흉부 X-선 검사 |
| | 흉부 X-선 검사상 유소견자 및 유증상자 | 객담검사(도말 및 배양) |
| ③ 학급(반)에 관계없이 동일학년에서 6개월 이내 도말양성 환자 2명 이상 또는 활동성 환자 3명 이상 | 동일 학년 전원 (교직원 포함) | TST ¹⁾ 흉부 X-선 검사 |
| | 흉부 X-선 검사상 유소견자 및 유증상자 | 객담검사(도말 및 배양) |

* 접촉자란 전염성 기간 동안 환자와 접촉한 자로 조사 대상범위는 환자발생 양상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예) 3월 발견된 환자의 증상기간이 전년도 말부터였다면 과년도 동일 학급생까지 확대할 수 있다.

* 접촉자 조사 후 추가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

1) TST(Tuberculin Skin Test, 결핵 검사)

: 결핵의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로, 피부 바로 밑(주로 왼팔의 팔뚝 부분)에 작은 주사를 한 후 48~72시간 후에 부풀어 오르는 반응이 생겼는지 확인한다. 결핵균에 감염되었거나 BCG 백신 접종자에게서 양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부풀어오른 자리는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는다.

나) 위의 “①”항과 “②”항의 접촉자에 대한 검진은 보건소에서 하도록 하고, “③”항의 접촉자에 대한 검진은 대한결핵협회에서 이동 흉부 X-선 검사를 실시한다.

* 대한결핵협회장은 검진 결과를 10일 이내에 보건소장과 학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결핵환자로 진단 받으면 결핵치료를 실시하고 잠복결핵감염자로 진단받으면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실시한다.(결핵관리지침 참조)

라) 보건소장은 결핵 환자에 대한 환자사례조사 결과, 확인된 접촉자에 대한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장과 조사일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마) 결핵 감염자로 판단된 자에 대해서는 시·도 결핵관리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잠복결핵감염치료를 시행 할 수 있다.

6) 추구 관리

가) 학교 : 학교장은 결핵환자 및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교육 및 상담(복약 확인 등)을 실시하고 보건소장으로부터 치료 완료된 학생명단을 통보받아 환자관리를 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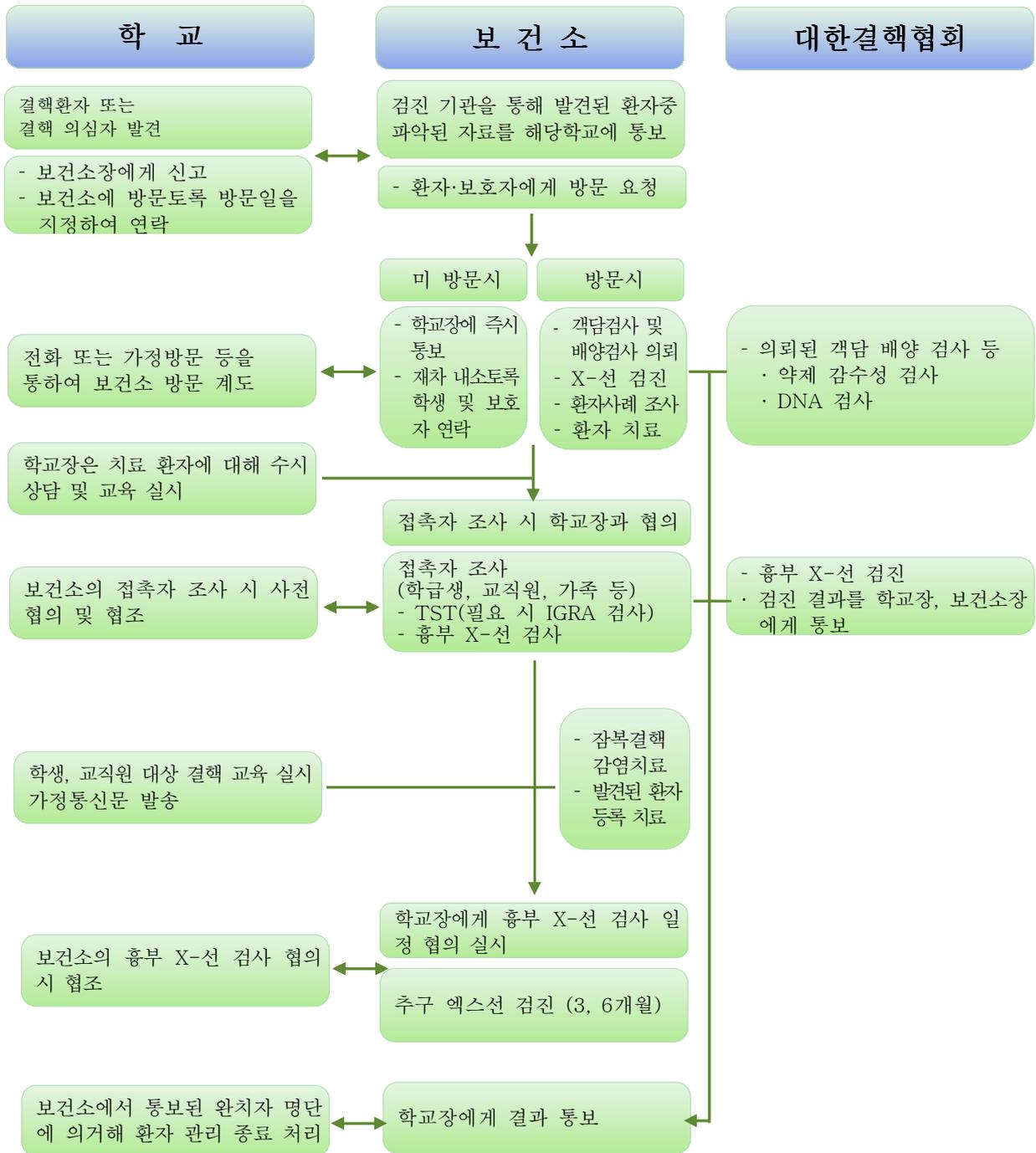
나) 보건소 : 복약확인을 철저히 시행하고 수약 불협조자의 경우 전화 및 가정방문을 통하여 복약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수약일을 지키도록 설득, 환자의 퇴록시 퇴록 결과를 학교에 통보

다) 접촉자 및 잠복결핵감염치료 대상자에 대한 추구 엑스선 검진

- 접촉자 : 집단에 대한 1차 검진을 실시하고 일정기간(3개월 또는 6개월) 후에 2차 검진을 실시
- 잠복결핵감염치료 중인 자 : 잠복결핵감염치료 종료시점까지 3개월 간격으로 검사
- 잠복결핵감염치료 완료자 : 잠복결핵감염치료 종료 3, 6, 12개월 후
- 잠복결핵감염치료 미실시자 또는 중단자 : 3개월 간격으로 검진하여 추가 활동성 결핵 환자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실시 단, 3개월 이전이라도 결핵 의심시 조기 검사

라) 잠복결핵감염자 관리 : 『결핵관리지침』의 ‘잠복결핵 치료’ 참조

【결핵관리 체계】



[학교 ⇒ 보건소통보 참고서식]

학교 내 결핵 환자(의심자) 발생 및 발견 통보

수신 : ○○ 보건소장

발신 : ○○ 학교장

보고 일시 _____ 보고자 _____

| 이름 | 학년/반 | 연락처 | 보호자 연락처 | 발견 근거 | 환자구분 | |
|----|------|-----|------------|-------|------|------|
| | | | | | 결핵 | 의사결핵 |
| | | | | | | |
| | | | | | | |

[학교 비치용]

결핵 환자 명부(학생, 교직원)

| 이름 | 성별 | 학년반 | 연락처 | 주 소 | 발견 근거 | 발견일자 (년, 월, 일) | 보건소 등록 등 치료내역 | 완치 여부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견근거 : 학교 정기검진, 학교 별도검사, 개별검사 등으로 구분 기록

* 보건소 등록 등 치료내역 : 보건소 등록여부, 치료과정 등을 간략히 누가 기록

[보건소 ⇒ 학교통보 서식]

학교 결핵환자 발견 및 치료내역(학생, 교직원)

수신 : ○○ 학교장

발신 : ○○ 보건소장

| 이름 | 성별 | 학년반 | 연락처 | 발견근거 | 발견일자 (년, 월, 일) | 도말결과 | 보건소 등록 등 치료내역 | 치료결과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치료결과는 치료종결 시 송부

학교 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및 관리 방안

□ 학교 보건실에서의 의약(외)품 사용

○ 약사(藥師)가 아닌 자에 의한 약사(藥事) 업무 수행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 :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의 직무(의료행위)

○ 학교보건실에서는 의약품 조제가 불가하며 일반의약(외)품만 사용

- 「약사법」 제50조, 동법시행령 제23조5호

□ 학교 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등

○ 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다른 것과 구별하여 보관

-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분류하여 보관하고, 냉장 보관 시에는 의약(외)품 이외의 것과 분리 보관

○ 의약(외)품 사용 및 보관 기준 준수

- 의약품 보관 용기 또는 첨부문서에 명기된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 등을 준수

※ 온·습도 조절, 직사광선 차단 등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고 의약품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

○ 의약품의 안전관리,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보관·관리에 철저

○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하지 아니할 것

□ 검진기관의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1.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검진기관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제2항 관련 [별표2]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적절한 의료장비를 사용하여 학생 개인별로 정밀하게 실시한다.
2.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검진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검진결과를 판정, 기재한다.
3. 검진결과 통보: 검진기관은 건강주의, 질환의심 또는 유소견자의 경우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완료 후 15일 이내에 검진학생에 대하여 학생건강검사(구강검진)결과통보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검진기관이 보관, 1부는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 1부는 학교로 통보한다.
4. 검진기관 준수사항
 - 가. 검진기관은 검진실시에 앞서 검진에 필요한 일반검진문진표, 구강검진문진표, 검진안내서(검진장소, 검진시간, 검진절차 및 검진 시 유의사항 등) 등을 사전에 학생들에게 배부한다.
 - 나.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반드시 충족하고 검진업무 수행한다.
 - 다. 검진기관은 흉부방사선 검사를 위한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필증 사본을 비치하고, 검진장비에 대한 정도관리 철저한다.
 - 라. 무자격자(의사가 아닌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의 검진행위 금지
 - 마. 검진결과 통보시기 준수
 - 바. 학생의 인적사항, 검진자료 등의 개인정보 보호 및 검진통계자료 보안관리 철저
5. 사고책임: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진에 따른 제반 의료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검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는 검진기관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비용: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사에 따른 제비용을 부담하고, 계약금액이외의 여하한 명목의 경비를 “갑”에게 요구할 수 없다.
7. 검진비용의 청구·지급: 검진기관은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는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지급한다.

□ 검진기관의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9. 손해배상: 검진기관은 상기 계약사항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때 계약보증금을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검진기관이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
10. 검진취소 등: 천재지변 또는 학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학생 건강검진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때에는 학교는 즉시 검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검진기관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1. 계약조건: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학교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한다.(청렴계약특수조건은 학교에서 교부)
12. 계약 시 제출서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수의각서(학교에서 서식 제공), 통장사본

【참고자료 5】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교육 내용과 시행방법

□ 교육내용

- 어린이 기호식품 및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안전과 영양, 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식품위생, 급식안전, 영양관리, 식중독 예방,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영양량 표시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관련교육 및 홍보
-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학생 지도
-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 시정, 질병예방을 위한 저체중, 성장부진, 빈혈, 과체중, 비만학생 등에 대한 영양교육
- 학생들에 대한 위생적인 배식관리와 편식교정, 식사예절 등 급식지도, 잔반 안남기기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바람직한 식생활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

□ 시행방법

- 교육내용과 교육대상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월별 교육활동 추진계획은 학교장이 결정하되,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교육실적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 의한 “학교급식일지” 등에 기록(입력)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함.

【참고자료 6】

2013년도 기본방향 주요 변경사항 요약

<보건관리 분야>

| 구 분 | 2012년도 주요내용 | 2013년도 변경내용 | 비 고 |
|----------------------|---|---|--------|
| 1. 학교 성교육 등 보건교육 내실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수) - 초등학교 : 5·6학년 각각 연간 17시간이상 체계적 실시 - 중·고등학교 : 선택과목 ※ (초) 교과, 창체시간 (중·고) 선택과목, 창체시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수) - 모든학교 : 최소한 1개학년 이상 연간 17차시 이상 정규 교육과정에서 지속적 운영 ※ (초) 교과, 창체시간 (중·고) 선택과목, 창체시간 | <내용변경> |
| | | <p><학교성교육강화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교육과정개편) 학생발달 단계를 고려한 체감형 교육내용으로 개편 ◦(시수확대) - 유아 : 8시간 → 10시간 - 초중고 : 10시간 → 15시간 | <추가> |
| 3. 학교 건강검사 철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진기관과 계약시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여부 확인 | <추가> |
| 4. 정서·행동특성 검사 및 관리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전체학교 모든 학생 ◦(절차)학교 내 1·2차검사·면담 후 학교 밖 기관(Wee센터·정신보건센터 등) 심층평가 의뢰 | <추후 별도통보 예정> | |
| 5. 교내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소 신고대상 감염병 발생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소 신고대상 감염병 발생시 공문(전자문서)를 통한 보건소 신고 | <내용변경>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NEIS 감염병 환자 통계 관리 철저 | <추가>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학조사 과정에서 필요시 관할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결핵관련 설명회 개최 | <추가> |

| 구 분 | 2012년도 주요내용 | 2013년도 변경내용 | 비 고 |
|-----------------------------|--|--|------------|
| 6. 학생 흡연 등 약물 오·남용 예방 | | ◦초등학생 연 2회이상, 중· 고등학생 연 1회 이상 의 무적 교육 실시 | <추가> |
| | | ◦중·고등학교의 음주 예방 교육 실시 여부를 집중 점 검하고, 교내 주류 반입금 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 될 수 있도록 추진 | <추가> |
| | ◦개정된 「국민건강증진 법」에 따라 2012.12월 부터 학교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 ◦지자체와 협의하여 학 교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우선 추진 | ◦유치원 및 초·중·고등 학교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에 대한 금연 구역 지정·운영(「국민 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 <내용변경> |
| 보고사항 | ◦약물남용 특별예방교육 실적 보고에 관한 내용 | ◦보고서식 변경 | <서식2호>변경 |
| 참고자료 | ◦학교 내 결핵관리 지침 | | <참고자료2 삭제> |

<환경관리 분야>

| 구 분 | 2012년도 주요내용 | 2013년도 변경내용 | 비 고 |
|--------------------|-------------|--|------|
| 7. 학교먹는물 위생관리대책 | | ◦'11~'12년 조사한 자연방사 성물질 함유실태 조사결과 원수에서 적용기준을 초과 한 학교의 경우 정수장치 철저 관리 | <추가> |
| | | ◦학교정수기 수질검사 부실 관리 등의 문제는 '12년 감 사원 감사시 지적된 사항 으로 이에 대한 후속조치 철저 및 학교장 등 학교관 계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별도 조치 강구(의도적 부 실관리 확인시 인사조치 또는 징계 등 적극 조치) | <추가> |

| 구 분 | 2012년도 주요내용 | 2013년도 변경내용 | 비 고 |
|-------------------------------|---|--|-------------|
| | ◦구재역 가축지 매몰 인근 지역 지하수 사용학교의 경우 수질검사시 염소이온 추가 실시 | - | <삭제> |
| 8. 학교 교사내 공기질 등 환경위생 개선 | - | ◦학교 교사내 공기질 관리 강화 추진(라돈 및 석면 검사대상 확대) | <추가> |
| | - | ◦유치원 공기질 관리 강화 방안 강구(학교보건법시행규칙에 따른 공기질 점검 실시에 대한 홍보 및 지원) | <추가> |
| 9.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교육환경보호제도 관리철저 | - |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내 실태점검 및 후속조치 강화(관계부처 합동점검 정례화 추진, 행정대집행 등 적극 요청) | <추가> |
| 10. 깨끗한 학교만들기 | - | <전체 삭제> | <삭제> |
| 11. 학교석면관리종합대책 추진 | ◦학교별 실태조사결과에 대한 학교관계자 홍보 및 관리능력 배양 | ◦시·도교육청별 효율적 석면관리를 위한 석면 해체·제거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및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석면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 준수 철저) | <내용변경> |
| 보고사항 | ◦학교먹는물 관리실적 | ◦보고서식 변경 | <서식2호>변경 |
| 참고자료 | ◦학교정수기의 위생관리 방안 | | <참고자료 3 삭제> |
| 참고자료 | ◦공기정화장치 관리 및 설치지침 | | <참고자료 4 삭제> |

<급식분야>

| 구 분 | 2011년도 주요내용 | 2012년도 변경내용 | 비 고 |
|---------------|-----------------|-------------|------|
| 12. 학교급식의 안전성 | 가.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로 | | <추가> |

| | | | |
|---------------------|------------------------------|--|--|
| 확보 | 급식환경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까지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100% 목표 추진 ◦ 특히, 급식실 종사자가 안전 사고 예방을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한 "안전한 급식실 조성을 위한 시설 기준" 반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총리 보고 및 발표('12.8월)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 개선시 등 메뉴얼을 반영하여 재해사고 예방에 기여 * 동 메뉴얼은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마련중이며, '13.1월 배부예정 |
| | 마. '학교급식 위생관리 시스템' 등 적용의 내실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식중독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중독 확산 조기차단을 위해 식재료 공급업체 계약변동 사항 등을 지체 없이 시스템에 입력 | <p><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중독 예방 강화 *식약청 협조사항 |
| | 사. '학교 식중독 원인 조사팀' 구성·운영 | 사. '학교 식중독 대책반' 구성·운영 | <p><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소 주관 역학조사 일원화 및 기능 구분 |
| 13. 영양관리 및 식생활지도 강화 | 나. 올바른 식사선택 능력 배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운영 방안 및 메뉴얼 통보 ('12. 9월) - 교육청은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시행여부 확인 등을 통해 안정적 정착지도 | <p><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시행 내실화 |
| | 다. 영양교사 배치 및 식생활교육·영양상담 실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 <p><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교육을 학교 |

| | | | |
|----------------------------|---|--|--|
| | | <p>교육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초 "학교교육(운영) 계획" 수립시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계획 반영 | <p>교육(운영)계획에 반영 월2회 이상 실시 *국가정책조정회의 요구사항('12.5월)</p> |
| 14.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 <p>가. 학교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조달을 통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준수 의무화('12.9~) | <p><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부처 합동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개선대책」 ('12.8월) |
| 15. 저소득층 및 농어촌 지역 학교급식비 지원 | <p>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과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가 온라인으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 사이트"에 신청하거나 학교 행정실에 학부모가 직접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접수업무 위임(학교 → 읍면동 주민센터) 및 1회 신청으로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도록 NEIS-사통망(사회복지통합관리망) 연계 구축('13.2월~) - 보호자가 온라인으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포사이트"에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우편, 팩스 불가) - 사통망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 및 초기 결정 후 학교에 통보, 학교(NEIS)에서 대상자 최종 결정 | <p><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접수업무가 학교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관 |
| 16. 학교급식 지도·감독 및 행정지원 강화 | <p>다. 학교급식 종사자 처우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 조리종사자의 후생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절단화상 등 안전사고 발생시 산재보험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발생에 대비, 일반상해보험 가입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리종사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 질병, 장애 등의 재해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보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및 지원 | <p><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식종사자 산재보상 서비스 강화 |